제321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2013년12월1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 1. 제321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3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 3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4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 6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
- 7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7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75.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76.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대안)
- 77.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О	의원(황인자) 선서 및 인사6
1.	제321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6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6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6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6
5.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6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유기준·문정림·정희수·김광진·이
	주영ㆍ남경필ㆍ정갑윤ㆍ이강후ㆍ이진복ㆍ이현재ㆍ박대동ㆍ김재경ㆍ심학봉ㆍ신의진ㆍ안효대ㆍ유
	승우·장윤석·정수성 의원 발의)6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
	김재원·최봉홍·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7
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유승우·
	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
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
	김재원・최봉홍・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7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 7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7
12.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김한표ㆍ
	김재원·최봉홍·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7
1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유승우·
	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7
1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유승우·
	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7
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유승우·
	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7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1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배기운·
	김춘진・이윤석・안규백・유성엽・송호창・전병헌・부좌현・민홍철 의원 발의)7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7
19.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유승우・이우현・홍문표・유기준・
	박대동·윤명희·이완영·이종훈·이한성·이노근·권성동 의원 발의)7

2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박대동·김태흠·정희수·한기호·김

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박대동・김태흠・정희수・한기호・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10 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10 2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11

을동·유일호·이만우·홍문표·김상훈·김현숙 의원 발의)10

김을동・유일호・이만우・홍문표・김상훈・김현숙 의원 발의)10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2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유성엽·윤관석·인재근	L .
	홍종학ㆍ배기운ㆍ우원식ㆍ이인영ㆍ정성호ㆍ김제남 의원 발의)	12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최민희·이윤석·김우남·박병석·	박
	인숙·김동철·장하나·김광진·홍익표·주승용 의원 발의)	13
2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3
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31.	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3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4
3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재윤·배기운·김성곤	<u>.</u>
	진성준ㆍ원혜영ㆍ최민희ㆍ윤후덕ㆍ전병헌ㆍ백재현 의원 발의)	14
3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승남·이인영·윤후덕·이찬열	<u> </u>
	백재현·박기춘·이원욱·김관영·김경협 의원 발의)	14
3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4
3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37.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3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3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박성효・박덕흠・金永柱・주영순・강기윤・황영철・최봉홍・서용교	<u>.</u>
	이종훈·송광호·신동우·윤영석·이운룡·이에리사 의원 발의) ···································	14
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7
4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17
42.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배기운·유대운·김민기·이낙연·	김
	미희·강동원·문병호·유성엽·김성곤 의원 발의) ·····	17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7
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재영・권성동・서용교・신의진・남경필	<u>i</u> .
	이진복·이헌승·김상훈·김정훈·하태경 의원 발의) ······	17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7
4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황영철・배재정・최민희	
	홍종학ㆍ정희수ㆍ최재성ㆍ김영록ㆍ유성엽ㆍ김성곤 의원 발의)	19
47.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민식	١.
	민현주·권은희·이우현·김세연·이운룡·박원석·김을동·조명철 의원 발의)	19
4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박민식 · 민현주 · 권은희 ·	0]
	우현·김세연·이운룡·박원석·김을동·조명철 의원 발의) ······	19
4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이우현	ļ •
	김세연ㆍ이운룡ㆍ박원석ㆍ김을동ㆍ조명철 의원 발의)	
5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1
5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1
56.	개발이익화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1

5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21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권은희・한기호・조현룡・
	홍지만·이재영·함진규·정희수·홍문표·문대성·박대동·김근태 의원 발의) ·······23
5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발의)(조현룡ㆍ박성호ㆍ김한표ㆍ
	이윤석·이헌승·이철우·주승용·이명수·김성곤·박인숙 의원 발의)23
6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홍종학・배기운・민홍철・박수현・
	전순옥·윤관석·박남춘·김동철·우원식 의원 발의) ········23
6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안홍준・김동완・심윤조・조명철・
	정문헌·이현재·이한성·조원진·박민수 의원 발의)23
62.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김동철ㆍ전병헌ㆍ박남춘ㆍ정성호ㆍ
	안규백 · 김영우 · 유성엽 · 유대운 · 김민기 · 김성곤 · 배기운 · 이종진 · 김춘진 · 이찬열 · 민홍
	철 의원 발의)23
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24
6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ㆍ전해철ㆍ이만우ㆍ윤후덕ㆍ
	김재윤·전순옥·민홍철·김승남·김민기·박인숙·김성곤·강동원·문병호 의원 발의) ············24
6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24
66.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4
6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손인춘·
	이만우·김정록·김현숙·서상기·김장실·현영희·정두언·김세연·박성호 의원 발의) ·······26
6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26
6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윤상현·이명수·정희수·
	정몽준·박성호·윤명희·민병주·강은희·신의진 의원 발의) ···································
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윤상현·이명수·
	정희수・정몽준・박성호・윤명희・민병주・강은희・신의진 의원 발의)26
7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26
72.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27
7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27
7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27
75.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27
76.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대안)(외교통일
	위원장 제출) ···································
77.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제출) 29
O	휴회의 건(의장 제의)·······31
О	5분자유발언31

(14시12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호영 의원, 간 사에 김학용 의원, 백재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 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종태 의원 대표발의로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법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로 유학원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종훈 의원 대표발 의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명숙 의원 등 25인으로부터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촉구 결의 안,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 안 등 4건의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황인자) 선서 및 인사

○의장 강창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 16일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황인자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인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황인자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자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국회의원 황인자

○**의장 강창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황인자 의원의 인사말씀 이 있겠습니다.

○**황인자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새누리당 소속 황인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정무장관실을 비롯하여 행정 자치부 또 여성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등 중앙부 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거치면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 합류하면서 여성정책 전문가로서 그동안 쌓아 온 역량을 힘껏 발휘해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작년 오늘은 뜻 깊고 역사적인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족한 제가 이처럼 역사적인 날에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인사말까지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는 '청송지본 재어성의(聽訟之本 在於誠意)'라는 말이 있습니 다. 송사를 해결함의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 는 뜻인데, 오늘날 우리 정치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산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정성을 다해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구현해 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겠습 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부족한 저를 이처럼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황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1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의장 강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1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교섭단체대표의 원과 협의를 거쳐서 12월 11일부터 2014년 1월 3 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 위원장 제출)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5.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 위원장 제출)
-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유기준·문정림·정희수·김 광진·이주영·남경필·정갑윤·이강후·이 진복·이현재·박대동·김재경·심학봉·신 의진·안효대·유승우·장윤석·정수성 의 원 발의)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 김재원 · 최봉홍 · 유승우 · 김성태 · 박창식 · 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 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 · 김성태 · 박창식 · 김기선 · 노철래 · 강기윤 의원 발의)
- 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김한표 · 김재원 · 최봉홍 · 유승우 · 김성태 · 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 · 김성태 · 박창식 · 김기선 · 노철래 · 강기윤 의원 발의)
-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 최봉홍 · 유승우 · 김성태 · 박창식 · 김기선 · 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 12.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김한표 · 김재원 · 최봉홍 · 유승우 · 김성태 · 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 1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 · 김성태 · 박창식 · 김기선 · 노철래 · 강기윤 의원 발의)
- 1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 · 김성태 · 박창식 · 김기선 · 노철래 · 강기윤 의원 발의)
- **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 · 김성태 · 박창식 · 김기선 · 노철래 · 강기윤 의원 발의)
-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 김재원 · 최봉홍 · 유승우 · 김성태 · 박창식 · 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 1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배기운 · 김춘진 · 이윤석 · 안규백 · 유성엽 ·

- 송호창·전병헌·부좌현·민홍철 의원 발의)
-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유승우·이우현·홍문표· 유기준 · 박대동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이한성 · 이노근 · 권성동 의원 발의)

(14시21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항 각급 법원의 설 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치료감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법원조 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 정 제8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9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특정강력범죄 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 정 제18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정부법무공단법 일 부개정법률안,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갑윤 의원 나오셔서 18건 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정갑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울산 중구 출신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 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 조 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벌금형의 법정 형을 정비하고 군사법원의 확정사건 판결서와 증 거목록 등의 공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벌금형의 법정형을 정비하는 한편 보호관찰과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 조 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법정형 중 금 고형을 삭제하여 징역형으로 단일하게 정비하는 한편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이행기를 연장하는 등 개정 내용의 타 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은 법정형 정비대상 법률안으로서 벌금형 및 금고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 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서 형법 제337 조의 강도상해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 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을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원장 등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법 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변호사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이었으나 변호사 정원을 현행 4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8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0인, 반대 2인, 기권 4인 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1인, 기권 9인으로서 치 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22인, 반대 2인, 기권 16 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2인, 반대 4인, 기권 4인 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3인, 반대 4인, 기권 3인 으로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1인, 반대 4인, 기권 2인 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1인, 기권 7인으로서 디 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9인, 반대 3인, 기권 3인 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5인, 기권 3인으로서 비 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인, 기권 14 인으로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6인, 반대 3인, 기권 7인 으로서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0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8인, 기권 9인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기권 2인으로서 특 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1인, 기권 5인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0인, 기권 9인으로서 정 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박대동·김태흠·정희수·한기호· 김을동·유일호·이만우·홍문표·김상훈· 김현숙 의원 발의)
- 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박대동·김태흠·정희수· 한기호·김을동·유일호·이만우·홍문표· 김상훈·김현숙 의원 발의)
-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 장 제출)

(14시49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0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기술신용보증 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중 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 사일정 제2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 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대동**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6건 의 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기본재산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필요한 과세정 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요청하도록 일 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김우남 의원과 김회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 건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가목돈마 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저축기관이 농어민 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으로 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저축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 정수급 한 금액을 환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 은 정호준 의원, 김관영 의원, 김종훈 의원, 송광 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 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식회계에 대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자를 확대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 며, 회계감사인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 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회사 임직원이나 회 계담당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 시 부과 하는 벌칙수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 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전해 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이중상환청 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중상환청구 권부 채권의 발행기관을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 관으로 한정하고, 담보자산을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으로 제한하며, 발행한도를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 률의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고, 채 권 발행 등록 시에 조달자금 운용계획을 등록하 도록 하되 그 운용계획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본 의원, 김기선 의원, 안민석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 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관계 업 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 며, 청약 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운전면허의 효력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도 함께 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신용보증기금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2인, 기권 9인 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인, 기권 13 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런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기권 5인으로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3인, 기권 5인으로서 이 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6인, 기권 5인으로서 보 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유성엽·윤관석·인재근·홍종학·배기운·우원식·이인영·정성호·김제남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6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조해진 의원 나 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조해진 존경 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조해진 의원입

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 다.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 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자 하는 내용으로서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특 정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라는 법 취지 를 고려하여 대기업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사업 범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 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12 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민홍철·최민희·이윤석·김우남· 박병석 · 박인숙 · 김동철 · 장하나 · 김광진 · 홍익표·주승용 의원 발의)
- 2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 위원장 제출)

(15시07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7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군인복지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국방위원회의 백군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 해서 제안설명 ·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백군기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백군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 제안한 군인사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임용권자가 관행적 으로 휴직을 명하여 기소휴직제도가 군인에게 불 리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군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 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 기소휴직을 명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기소휴직의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 입니다.

(강창희 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손인춘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 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군 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 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0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기권 7인으로서 군 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3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재윤·배기운· 김성곤·진성준·원혜영·최민희·윤후덕· 전병헌·백재현 의원 발의)
- 3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승남·이인영·윤후덕· 이찬열·백재현·박기춘·이원욱·김관영· 김경협 의원 발의)
- 3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3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 置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 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박성효·박덕흠·金永柱·주영순·강기윤·황영철·최봉홍·서용교·이종훈·송광호·신동우·윤영석·이운룡·이에리사 의원 발의)

(15시13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29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연호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 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 정 제34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 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11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백재현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광명갑 백재현 의원입니 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심사한 결과 횡령·배임 등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게는 벌금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고,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강등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법안심사 시기를 고려하여 일부 주문의 시행일을 '2013년 12월 12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과 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 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강기시설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 경하고,

둘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위반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민법상 성년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상 동원 인력 하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직장 민방위 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시·군·구 등의 공무원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 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대통령령에서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직장 민방 위대 이외에 통ㆍ리 민방위대도 규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ㆍ리 민방 위대의 경우도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수 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찬 의원과 이한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전부 및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 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 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는 한편 세종시 관할구역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 하도록 하였고.

둘째, 세종시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자치권 강화를 위해 의원 정수를 현재 13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였고,

셋째, 세종시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 금의 지원 및 보정을 2020년까지 연장하였으며, 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일항쟁 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금년 말까지인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존속기 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위로금 등 의 지급 신청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 려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

라 정부가 제출한 연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창사 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 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2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조문의 내용이 동 개정안에 반 영되어 있지 않아 해당 개정조문을 현행대로 유 지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나머 지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 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안 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7인, 기권 5인으로서 국 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9인, 기권 9인으로서 지 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연호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승 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인, 기권 5인 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5인, 기권 4인으로서 민 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4인, 기권 6인으로서 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거창사건등관 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제 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 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41.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42.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오제세·배기운·유대운·김민기· 이낙연 · 김미희 · 강동원 · 문병호 · 유성엽 · 김성곤 의원 발의)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 위원장 제출)
- 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김도읍·이재영·권성동·서용교· 신의진 · 남경필 · 이진복 · 이헌승 · 김상훈 · 김정훈·하태경 의원 발의)
-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5시32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40항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41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사일정 제42항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 정 제4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사일정 제44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진선미**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밀폐구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특별히 안 전강화가 필요한 영업장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둘째, 영업장의 내부구획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부구획은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대운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 사 현장에는 화재에 대비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하였고,

둘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한 시 정명령에 판매중지를 추가해서 소방용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 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동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국민 불편과 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장물을 습득한 자 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를 현행 공소권 소멸 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개정안 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기춘 의원, 진선미 의원, 문희상 의 원, 이찬열 의원, 박남춘 의원 및 박성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계속 심사를 위해 계류키로 한 진선미 의원안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5건의 개정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

로 표시하여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하되, 관내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 없이 사전투표 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과 확정일을 현행보다 각각 3일씩 앞당겨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선거일 전 10일까지 조기에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거소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현재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범위에 강사가 포함되고 있어 강사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나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 지 명경쟁 방법을 도입하고,

둘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과 갱신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강창일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강창일 의원 의석에서 — 잊어버렸어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홍의락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95인, 반대 9인, 기권 20 인으로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8인, 기권 7인으로서 공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2인, 반대 4인, 기권 7인 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황영철·배재정· 최민희 · 홍종학 · 정희수 · 최재성 · 김영록 · 유성엽·김성곤 의원 발의)
- 47.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민식· 민현주 · 권은희 · 이우현 · 김세연 · 이운룡 · 박원석·김을동·조명철 의원 발의)
- 4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 이우현 · 김세연 · 이운룡 · 박원석 · 김을동 · 조명철 의원 발의)
- 4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 이우현 · 김세연 · 이운룡 · 박원석 · 김을동 · 조명철 의원 발의)
- 5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45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46항 한국농수산대 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한 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49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대수 의원 나 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경대수 존경 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을 지역구로 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 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농수산 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의 무종사기간을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농 식품부장관이 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의무종사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 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졸 업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법 취지를 고려해서 현행 대로 하고. 졸업생의 의무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주체를 농식품부장관에서 한국농 수산대학의 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투자회사 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 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 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 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의무 불이행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을 영업정지 로 변경하고, 당초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한 어선 및 어선사업장에 대한 지도 · 감독 등의 사 무를 현행대로 위임사무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7인 으로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 으로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8인 으로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인, 기권 13 인으로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16 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7인, 반대 4인, 기권 6인 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15시54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5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남인순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의 책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 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급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 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 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국 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 위원장 제출)

(15시56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52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代理 朱永順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입 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 실 등을 공표하도록 하되,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 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시59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53항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

55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 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6항 개 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함진규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시흥갑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 정부 가 제출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단 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3인, 기권 6인으로서 건 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정훈 의원님, 또 늦으셨지요?

(웃음소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9인, 반대 3인, 기권 9인 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윤 의원**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윤 의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사회 전체에 배분하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1989년 법시행 이래 부족하나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작년에 1년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감면기간을 또다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다. 이는 사실상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말그대로 불로소득입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낮춰 줘서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약 400억에 달하 는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재정이 힘들고

부족한 재정여건 때문에 중요한 복지정책과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자, 부동산 투기 세력은 득을 보겠지만 국가재정과 우리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게 될것입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정의 실현, 토지 이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다음은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지금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병윤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를 중심으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이익환수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을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입지 사업에 한하여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 1년입니다 - 수도권은 50% 그리고 비수도권은 100% 부과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두터운 동복을 입으면 여름이 되면 벗습니다. 또 반대로 여름에 얇은 옷을 입 었다가 겨울이 되면 동복을 입습니다. 바로 이러 한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이것은 한시적 감면 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의 시행에 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집을 짓는다든지 어디 개발한다든지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부분 뭐냐하면 LH공사라든지 서울시 SH공사라든지 이와같이 공공사업에 준하는 또는 공공사업의 경우에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물량을 따져 보면 그것이 약 23%인가 이 정도뿐이안 됩니다.

두 번째로 또한 택지·산업·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하면 조성원가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일종의 촉진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 분양가를 인하하기 때문에 결국 일반 국민의, 특히 서민들에게…… 왜냐하면 LH나 이런 데는 대개 서민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런 데에 혜 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개발부담금 감면율조차 지금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로 함으로써, 그것도 다 1 년간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도 맞췄다.

넷째, 지금 전체 사업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총 물량의 23%, 그러니까 계획입지사업입 니다. 그런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 별히 문제가 없고.

아까 여기에서 세수 감소를 걱정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406억이라고 그랬지요. 광특회계 로 들어가는 것은 203억입니다. 물론 이것이 적 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부동 산 경기가 살아나고 또 서민주택을 짓는 데 더 유인이 되고 한다면 이것은 그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 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산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세법 등 타 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만 한정하 여 가산세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국가, 모든 국민들의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년간만 한시적으로, 그것도 지방에는 100%, 수도권에는 50%로 함으 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국토 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대체적인 중론이고, 거기에서 존경하는 오병윤 의원님께서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하셔서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에 조그만 동력이라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석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안전사고가 위험합니다. (웃음소리)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또 김정훈 의원님 안 들어오셨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28인, 반대 51인, 기권 24 인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권은희· 한기호 · 조현룡 · 홍지만 · 이재영 · 함진규 · 정희수 · 홍문표 · 문대성 · 박대동 · 김근태 의원 발의)
- 5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조현룡 의원 대표발의)(조현룡·박성호· 김한표 · 이윤석 · 이헌승 · 이철우 · 주승용 · 이명수·김성곤·박인숙 의원 발의)
- 6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홍종학・배기운・민홍철・ 박수현 · 전순옥 · 윤관석 · 박남춘 · 김동철 · 우원식 의원 발의)
- 6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안홍준・김동완・심윤조・ 조명철 · 정문헌 · 이현재 · 이한성 · 조원진 · 박민수 의원 발의)
- 62.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김동철·전병헌·박남춘· 정성호 · 안규백 · 김영우 · 유성엽 · 유대운 · 김민기 · 김성곤 · 배기운 · 이종진 · 김춘진 · 이찬열 • 민홍철 의원 발의)

- 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교통위원장 제출)
- 6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전해철·이만우·윤후덕·김재윤·전순옥·민홍철·김승남·김민기·박인숙·김성곤·강동원·문병호의원 발의)
- **6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 원장 제출)
- 66.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7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58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항 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6항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土交通委員長代理 李憲昇 존경하는 이병석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 누리당 이헌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부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수사업자연합회 가 공제사업을 할 경우 운영위원은 시도별 협회 대표를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하고, 공제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의 결격 사유에 금 융 관련 법률 위반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 조현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 업자가 공항을 통과·환승하거나 국내 출발 승객 의 성명·국적 및 여권번호 등 운송정보를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토록 하되, 공항 운영자의 정보 오용을 막기 위해 정보 제공 목적을 공항 및 항 공기의 보안을 위한 것으로 명시하는 등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국도에 대한 통합채산제의 신규 적용 또는 기 승인 내용의 변경 시 시행 1 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고, 통합채산제의 승인 주기를 5년 미만으로 하려는 내용으로 현장 사정에 따라 긴급 개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 려하여 통행료 수납 공고 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궤도운송 사고의 보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MRG 국고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타 개정안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타당성 있는 나머지 개정 내용은 일부 체계자구 를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일 의원안, 임내현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 조현룡 의원안, 정희수 의원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제작사의 공장출고일 이후 자동차 판매 전에 발생한하자 및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인증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튜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동차 튜닝의 범위를 규정하고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도입하며, 정비요금의 과다청구를 예방하기 위하 여 주요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표준정비시간과 시 간당 공임을 사업장 내에 게시토록 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은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승인관청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시 ·도지사인 경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의원 안과 조현룡 의원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항공레저스포츠 이·착륙장 등에 관한 근거 마련, 항공레저스포츠산업에 대한 규 제완화 및 안전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항공기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항공운임 총액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한 항공운송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도로법 전부개정법 률안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방법을 변경하 며,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방법을 도 입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고속 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려는 내용 으로 도로구역 내 설치가능시설을 공공목적용으 로 한정하고, 접도구역 토지의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착수시기를 사전에 고지토록 하며, 고 속국도 등을 파손한 자에 대한 벌금 규모를 상향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기권 4인으로서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항 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4인 으로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5인, 기권 11 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기권 3인으로서 자 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2인, 기권 5인으로서 도 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6인, 기권 5인으로서 항 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2인, 기권 4인으로서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 손인춘·이만우·김정록·김현숙·서상기· 김장실·현영희·정두언·김세연·박성호 의원 발의)
- 6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6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윤상현·이명수·정희수·정몽준·박성호·윤명희·민병주·강은희·신의진 의원 발의)
- 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윤상현· 이명수·정희수·정몽준·박성호·윤명희·

민병주·강은희·신의진 의원 발의)

7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6시31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67항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9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박인숙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서울 송파갑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 속 박인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자료 확인을 위한 관계 전산망 이용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검토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자금 지원 자격 증명을 위해 필요한 요구 정보의목적과 기관을 명확히 하는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 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대 안으로 통합 조정하였는데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 울대학교치과병원의 사업 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 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가 심 의 의결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며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된 것에 맞 추어 교원들의 병원 겸직 조항 등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개별 병원 설치법에 명시하여 병원들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병원의 당연직 이사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포함하고 이사 수를 1명들리고 있는데 당연직 이사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우려가 있어 이사의 수를 현행보다 2명들려 당연직 이사 외에 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6인 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국 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74항 국군부대의 「국제연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 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2.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
- 7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7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75.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 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 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76.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 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시40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72항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3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74항 국군부대의「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75항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 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 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 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6항 한 -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대안), 이상 5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심윤조**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비준동 의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 의안은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 향상을 도 모하고 외국에서의 항만국 통제로 인한 운항 차 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정부가 각각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 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 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 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 내 세계은 행그룹 사무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사무소의 공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부여하는 특권 과 면제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사무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려 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 협력증진 결의안(대안)은 남경필 의원과 김성곤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2건의 한-독 수교 관련 결의안들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 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결의안(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심윤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 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3인, 기권 10 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 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7 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 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 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 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인, 기권 6인 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 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 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 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한 -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7.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6시48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77항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 정합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의 남경필 위원 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남경필** 존경하 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의원입니다.

우리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 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부정행위 등 군국주의화와 역사 퇴행 횡보에 대한 명시적인 중단과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 는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 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반대합니 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 지고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 주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앞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며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전시 위안부 인권유린 행위 에 대해 명확히 반성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부정행위와 야스쿠니신사 에 합사되어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에 대 한 미화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의도를 포기해야 합니 다.

둘째,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 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미합중국 정부는 미일동맹 강화 명목으 로 진행 중인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넷째,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존 중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뜻을 정확 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외교 공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동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을 의 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 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성동을 홍익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일본 정부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특위가 제출한 동 결의안은 기존의 정부의 입장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위권이란 국제법적으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모든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자국을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특히 2차 대전 전범국이면서 과거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거부한 채 군 사대국화에 집착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은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2차 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이제 해외파병은 물론이고 타국의 전투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와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일본은 이를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국은 이를 승인하 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2014년은 갑오년입니다. 120년 전 바로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일본과 청나라가 맺었던 1885년의 텐진조약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조약은 조선에서 청·일 양국 군대의 동시철수와 동시파병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일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실제 1894년 동학혁명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고, 이에 일본군대는 텐진조약에 의거해 일본군대를 조선에 자동적으 로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결국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이후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이어져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오늘 일본이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 130여 년 전에 일본이 청나라와 체결했던 텐진조약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청나라가 아닌 미국을 파트너로택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제2의 텐진조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일 간 이런 움직임에 대해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조차도 대정부질문에서 가쓰라-태프트의 밀약이 재연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한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당당한 반대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유사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이 전제된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 역시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화와 과거사 부정 등의 역사적 퇴행중단을 요청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용인과 동의를 전제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국가안 전보장전략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독 도를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밝히는 등 역사적 퇴행 중단의 기미를 전혀 보이 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어느 국가도 해당 국가의 동의나 승인 없이 군대를 파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략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조차도 식민지를 침략 할 당시에 형식적이나마 국제법적으로 합법적 모 양새를 취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결의안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조건으로 제시한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이나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라는 것은 아무런 구속력 없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미국과일본에게 한국 정부의 동의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으며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EU를 비

롯한 많은 국가들이 일본의 입장만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의견은 고립되었고 일본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전략을 통해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 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 를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 부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을 중 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민국의 분명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이번 회기 내에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자체를 반대하는 보다 분명한 결의안을 통과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정부 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4년 내년은 청일전쟁이 발발한 지 120년 되는 해이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열어 나가 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여기 선배·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25인, 반대 29인, 기권 33 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59분)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 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명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모든 부문에서 우리가 겪고 이겨내야 될 과제들이 정말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도전으로 안겨 오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 돼야 되는 것은 서로가 의지하고 고무하고 밀어 주는 그런 사회통합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정말 위기에 있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이럴 때는 사회 통합이 최고의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정부를 향해서 근거 없는 남발들을 해대고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전·현 직 대통령에 대한 가슴 아픈 가족사를 들먹이면 서까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퍼부어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민족사에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 드려야 되 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부,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이 정부 1년도 안 됐습니다. 안 된 이 정부에게 정말 할 수 없는 말들을, 국민의 일반적인 문화 수준에는 와 닿지 않는 그런 폭언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기회에 우리 민주당,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좀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밀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셨지요, 북한 상황 어떻게 돌아 가는지. 장성택 숙청, 정말 우리가 설마설마 하던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우리 눈앞에 펼쳐 보였 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북한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의 처형으로 촉발된 북한 독재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 가 뭐인가, 결국 북한 사회의 민주화 아닌가 하 는 그런 결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우리 한민족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의 막중한 책임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자기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인간의 초보적인 기본권·생존권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권임을 만천하에 스스로보여주었습니다.

친·인척에게 이러할진대 일반 백성에게 가해지는 그 정권의 잔인함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히 갈 것입니다.

북한 독재정권은 전 세계 앞에서 보란 듯이 권력 2인자 총살하면서도 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 비인권적 행태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폭압성과 잔인성에 있어서는 나치 독일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는 증인들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그 생동한 잔인성을 들을 수 있는 2만 5000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수용소가 운영되고 그곳에서 1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죄 없는 죄 인이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17대, 18대에 이어서 인권법이 또다시 표류 상태에 있 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아직도 심의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TV를 보면서 보았던 것은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 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정말 존경스럽고 저희 들에게 힘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쌓은 그 민주화 투쟁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가 아닙니까?

북한인권법,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 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북한 체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인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법 제정 민주당의 성격에 맞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저희, 사실 어색합니다.

(「인권법 내용이 틀렸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분들이 앞장서면 저희들이 적극 따라가겠습니다.

(「내용 알고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번 기회에 정말 인권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간곡히 간곡히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 탁드립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 나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전혀 안녕하지 못한 민주당 천안갑 양승조 의 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며칠 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 석의 격정적이고 울분에 찬 브리핑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통령에 대하여 암살의 전철

을 밟을 수 있다는 건 언어살인이다, 국기문란이 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다, 양승조 최고위원이 암살 가능성에 대해 했던 발 언이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이정현 홍보 수석의 말대로라면 저 양승조는 살인교사 · 내란 선동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허위·과장·짜깁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의원님들!

제가 말한 전문을 읽어 보십시오.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중에 어느 말이 대통령에 대하여 위해를 선동·조장한 말입니까? 어디에 현직 대통령에게 흉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암살 가능성을 어디에서 언급했습니까?

한 사람을 단죄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는 해석 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고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

이정현 홍보수석은 단어를 짜깁기하고 없는 말 을 만들어 엄청난 언어살인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 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 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안통치 와 유신통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 고를 새겨들으라는 충언이었습니다.

당일 제가 한 발언의 제목은 "지금은 총체적 난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였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풀어낼 수 있 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오만과 독 선, 불통을 벗어 던지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위해를 선동·조장하고 암살 가능성을 발언한 사람이 '총체적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국민의 곁으로 다가 오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의 말이야말로 언어살인이고 저에 대한 위해를 선동·조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잘 하셨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 내용은 제가 발언 전 에도, 발언 당시에도, 발언 후에도 생각하지 않았 습니다. 제가 발언할 때 수십 명의 기자분들이 있었는데 심각한 말이라고 생각했다면 발언 후에 단 한 분이라도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한 분도 질문 하나 없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에 이어 새누리당은 규 탄대회를 하고 저에 대하여 일사불란하게 제명안 을 제출했습니다. 제명은 사형선고와 같은 최고 의 극형인데 아무리 읽어 봐도 제명사유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제명사유가 분명하다면 제명절차를 진행하십시 오. 과반이 넘는 집권당·다수당의 위력을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또한 제가 한 발언에 대하여 제 지역구인 천안 에서 여러 분의 의원님과 수천 명의 당원들이 규 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자유당 정권 이후에 어느 정권의 여당이 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그 지역구에 가서 규탄대회 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저의 입과 야당 의원의 입, 국민의 입에 재갈 을 물리려고 하는 폭거이고 정치적 테러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님들이 어떠한 협 박을 하고 위해를 선동·조장한다고 하여도 제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굴복하 지 않을 것입니다.

천안 규탄대회에서 제 충청도 선배이신 홍문표 의원님은 저를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고, 제가 돌아가 신 부모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저는 홍문표 의원님 같은 분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 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 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 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의원**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잘 경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일주년 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 불복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 분열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 습니다.

민생에 전념해도 부족할 시기에 대선 불복 논쟁으로 1년을 허비하고 있는 대한민국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의 퇴행적 인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만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부동산중개업자, 직장인 모두가 한숨뿐입니다. 싸 움질 그만하라는 애정 어린 말도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은 희망마저 잃어 가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논쟁과 정쟁으로 날을 새면서 예산 안 통과와 경제 활성화 등 민생 법안을 발목 잡고 있는 우리 정치권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자성해야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 우리 정치권이 희망의 불씨를 걷어차고 찬물을 끼얹고 있지 않은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에 매진해야 할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가장 소중한 시기인 지난 1년 간을 국회에 발목 잡혀 제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대선 불복 논쟁이 끝날 기 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과거 대통령선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대선 불복 공세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두 번에 걸쳐 10년간 집권을 한경험이 있는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에서 39만 표의 표차로 집권을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57만 표의 근소한 표차로 집권했습니다.

당시 두 차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사에 길이 남을 이른바 김대업 정치공작사건을 비롯한 온갖 탈·불법 선거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근소한 표 차로 두 번 씩이나 아쉽게도 패배했지만 지금과 같이 대선 불복 공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국익과 민생을 최 우선으로 하여 정책 경쟁을 벌여 왔습니다.

대선 불복은 국론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의 기능까지 마비 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도 보기 힘든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 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내년 치러질 6·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자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것은 국정의 대혼 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며 국민 의 선택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말에 의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다'는 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이어 우리 양승조 최고 위원 발언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저 버린 언어폭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 온몸을 바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쟁과 언어폭력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정쟁과 언어폭력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갉아먹습니다. 어느 정파가 집권을 하든 깨끗이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 오백년간의 당쟁의 참혹한 폐해를 우리 국회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 게 대처하면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 통령에게, 그것도 여성 대통령에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상생의 정치를 해 야 합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국회법하에서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하루가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활성화법 처리는 정부 여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을 위해 국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입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과 이렇게 마지막까 지 남아 계신 우리 동료 국회의원님, 특히 양승 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사이버사령부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 습니다. 1995년 7월에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5·18 군사쿠데타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는 논리로 무혐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군사 이버사령부의 중간 수사결과는 성공한 불법에 대 해서는 면죄부를 확실히 주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 주권에 대한 그리 고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도 성역은 있었 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수사결과는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가기관에 의한 엄청난 선거 개입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동안 경찰의 맹탕 수사가 있었습 니다. 그리고 검찰로 이첩된 뒤에 8개월 동안에 걸친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특별수사팀 그리고 그 팀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 내기가 있었습니다. 73건으로 시작한 게시 글이 121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사명은 여기까지 가 끝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2200만 건의 전 인미답의 분석되지 않은 트위터 글이 그대로 있 고 더 나아가서 전직 국정원장에 의해서 자행됐 던 이 어마어마한 전대미문의 선거 개입의 배후, 그 배후에 대해서는 전혀 들춰 보지도 못하고 있 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법원은 충분히 수사할 만큼 해 줬다고 얘기를 하 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렇다면 그 구속영장 청구는 쇼이고 거짓말입니 다. 바로 이렇듯이 청와대에 대한,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통해서만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그 진상 규명을 통해서 국정원 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군사이버사령부의 부이사관에 불과한 이 심리 전단장이, 2010년 발족 이래로 단 한 차례도 승 진하지 못한 이 사람이 과연 몸통이겠습니까? 본 인도 자기는 꼬리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육성 녹음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승진도 못 했고 도저히 11명을 지휘해서 그 어마어마한 정치 개입 글을 달고 본인이 지시를 할 아무런 범죄의 동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 다.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 사는 멈춰졌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진 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정원의 다시 돌아올 선거 개입의 그 무지막지 한 행태를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회는 말 그대로 민생으로 돌아와야 됩 니다. 그러나 민생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전 대미문의 아직도 채 밝혀지지 않은 이 의혹에 대 해서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직무상 의 독립이 보장되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 송호창 의원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의원이 이 특검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시작했습니다. 전폭적인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 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지난 1년에 대해 국민 행복이라는 소신과 원칙을 지켰다고 자평했습니 다. 원칙대로 가는 것이 불통이라면 그것은 자랑 스러운 불통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 평가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 만을 원칙이라 고집하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짓밟거나 제거하는 방식, 이것이 박근혜 정권 1 년이 보여 준 자랑스러운 불통정권, 소신 있는

독재정권 1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처음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대학가를 넘어 동네 곳곳, 직장인의 일 터로,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1년 동안 안녕하지 못한 국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두가 안녕한 사회를 만들자는 호소가 바로 이 대자보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과 보수 언론을 총동원한 폭압정치에 억눌려 있던 국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열흘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체포영장이 발부돼 민주노총 사무실에 갇혀 있는 노조 간부들을 찾아갔습니다.

몇 주간 가족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이들을 만나고 사무실에서 나서는 길에 제가 타고 있던 차량도 불심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노조 간부 한 명이 처음으로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민 다수의 뜻대로 철도민영화를 막아 내기위해 적법한 파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이 왜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경찰에 쫓겨야 하는지, 145명에 대한 중징계 착수, 8000여 명에 대한 직위해제가 도대체 이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된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국민스스로의 요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철도노조에 보내는 시민들의 성금과 초코파이, 핫팩 등의 격려 물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 분할때각과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철도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직위해제, 고소, 체포영장 발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의 불통과 독선, 폭압적인 조치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도 방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나선 철도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코레일 또한 이미 위법으 로 판결된 직위해제, 대량 징계 방침을 즉각 철 회해야 합니다.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국회가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라면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위 구성과 사회적 논의기구 추진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더이상의 고통, 혼란, 불편, 희생을 만들지 않으려면 탄압이 아닌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일 20일은 수서발 KTX 면허권 발부가 예상되는 날입니다. 물이 엎질러져 버리면 주워 담을수도 없지만 닦아 내는 일도 무척 힘이 듭니다. 녹조가 떠다니는 강물을 보면서도 뒤늦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이미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철도 적자를 만회해 보겠다고 분할매각을 선택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해 나가겠다는 선언 그시작입니다. 그다음은 적자 노선 폐지, 그다음은 요금 인상, 인력 감축,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이 같은 우려를 유언비어로 일축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박근혜 정권, 또한 이 자리의 국회의원 모두에게도져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안녕하지 못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여들 예정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공안 통치 에 억눌려 온 지난 1년, 민주주의가 산산조각 난 이곳에서 안녕을 묻는 소박한 대자보를 통해 간 혀 있던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이마저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대자보에 그치지 않고 안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든 원인과책임을 물으며 한 발자국 더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서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젊은이들의 고뇌만큼이나 국회 그리고 정부가 정말 안녕한 사회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법과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진심으로 되돌아봐야 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정 책 현주소의 안녕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은 원전 으로부터 생명 안전을 가장 우선해 요구해 왔습 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연일 터져 나온 원전 비 리, 고장 사고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강행한 원 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과 안전한 에 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을 에너지 정 책, 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이번 처음에 내 놓은 에너지 기본계획,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매 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여전히 에너지 낭비 사 회, 그리고 과다한 전력 낭비의 낡은 틀에서 벗 어나지 못한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외면해 버린 원전 확대 정책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안전 우 선주의에 입각해서 원전을 이용하고, 국민 여론 을 수렴해서 향후 20년의 에너지 계획을 원점에 서 재검토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은 수립하면서 국 민들의 여론 수렴한 바 없고, 공론화 과정을 제 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수차례에 걸친 공청 회 등 사회적 토론을 거친 것만큼도 못한 것입니 다. 지금까지 세 장짜리 자료를 국회에 보고한 것, 그리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반대 목소리를 틀어막은 부실한 공청회 한 번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년의 국가에너지 비전과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부의 불통 정치 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원전을 줄여 에너지 효율과 재 생에너지로 가는 정치 결단, 그리고 사회적 합의 를 통해서 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아름다운 3면의 바다를 온통 원전 으로 밀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위험도만 높이는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고 그 짐을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겨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줘야겠다고 하 는 현 세대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동료 의원은 원전 감축의 국 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국회 결의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지키는 에너지 100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 율을 높이는 수요 관리 위주 정책, 장거리 송전 망이 필요 없는 지역 기반 분산형 전력 체계, 원 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려 가는 에너지 전 환을 담아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국가에너 지 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고령의 마 을 주민은 추위에 저체온증을 감내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에너지 문제로 대 표되는 송전탑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급기야 한 분의 밀양 어르신이 농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 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게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과 주민 에 대한 인륜의 예를 갖추어 '애도기간만이라도 우리 함께 공사를 중단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자' 했지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부가 보내 온 답변은 분향소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물리력뿐이었습니다.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평화와 치유만이 대 립을 해결하는 최종 열쇠라 했습니다. 대화를 통 한 해법을 찾아 밀양 주민이 평화의 봄을 찾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혹한의 추위에 차디찬 아스 팔트에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겨울철 공사를 중단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불통·불안·불행 이 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 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에 살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양 주민은 국민입니다.

국민은 하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과 미래 세대의 생명 안전을 우선해서 탈 핵으로 가는 에너지 정책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정책, 국민과 함 께 최선을 다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녕한 사회 만들어 가기 위 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국민이 부여한 책 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병석**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강 동 원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강 길 부

.....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2인)

강 기 정

강기 유

강 석 훈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동 철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주 김성 태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용 태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종 훈 김 재 윤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워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화 류 성 걸 류지영 문 대 성 문 병 호 문 재 인 민병두 민병주 문 정 림 문 회 상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영 선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성 와 종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계 륜 신기남 신 경 민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기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승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재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이 군 현 윤 호 중 이노근 이 만 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상 직 이석혀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워 욱 이 유 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순 옥 전 하 진 장 윤 석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 우 택 정진후 정 수 성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 회 수 조 경 태 조 해 진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영 순 주호영 조 현 룡 진 성 준 최 동 익 진 선 미 진 옂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최 재 성 한 명 숙 최 재 천 한 선 교 한 정 애 홍 문 표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종 학 홍지만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강 창 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7인)

강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워 강 석 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미 희 김 명 연 김민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 곤 김 성 주 김성 태 김 승 남 김 영 록 김용 태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유 김 정 록 김 정 훈 김종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확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혅 김희국 김희 정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도 종 환 노 웅 래 류 성 걸 문 재 인 문 정 림 류지 영 문 대 성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상 은 박 수 현 박 병 석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워 성 완 종 송 광호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송 호 창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홍 준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효 대 염 동 열 양 승 조 여 상 규 오 병 유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기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명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이 군 현 이노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미경 이상규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주 영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 찬 열 이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해 차 이 헌 승 임 내 현 장 병 완 이 현 재 임 수 경 장 윤 석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젉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조 현 룡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진 하 황인 자

반대 의원(1인)

홍 종 학

기권 의원(2인)

김 영 우 박성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0인)

강기유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창 일 강석훈 강 창 희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기식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동 완 김 명 여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성 곤 김성주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성 태 김 승 남 김 김용 태 김 윤 덕 장 실 김 재 경 김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종 훈 진 태 태 년 김 태 원 김 김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한 길 김 학 용 김 현 숙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회선 김희국 김 희 정 나성린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도 종 환 래 류지 영 문 재 인 류성 걸 문 대 성 병 두 민병주 문 정 림 문 희 상 门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수 현 박성효 박 영 선 박 워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워 박 창 식 박 홍 근 박 혜 자 백 군 기 백 재 혀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설 후 성 완 종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신 계 륜 송 호 창 민 신 동 우 신 기 남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유 기 준 우 윤 근 원 유 철 유기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일호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영 석 윤 재 옥 윤 윤 호 중 이 군 현 이노근 이 만 우 이명수 이미경 이 병 석 이상규 이 상 일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이재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인제 이자스민 이 종 진 이 재 영 李 宰 榮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수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수 성 정성호 정 의 화 정 우 택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명철 조경태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 동 익 최민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지 만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2인)

이 재 오 홍 종 학

기권 의원(4인)

박 완 주 유 후 덕 은 수 미 전 병 헌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1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준 김기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민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주 김성 태 김 승 남 김 영 우 김용 태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학 용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선 김희국 김 희 정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영 문 대 성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두 민 병 주 민 혀 주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박 혜 자 부 좌 현 서 병 수 변 재 일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워 설 훈 성 완 종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우 상 호 우 원 식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기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이 군 현 윤 진 식 이 노 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 상 일 이석현 이 상 규 이상직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완 영 이용 섭 이 유 룡 이 워 욱 이 유 석 이이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재 영 李宰榮 이 주 영 이 재 오 이종진 이종훈 이 찬 열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 우 택 정 수 성 정 의 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 경 태 조 원 진 조명철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 동 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지 만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종 학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진 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22인)

김 기 식

이 춘 석

박 완 주

전 순 옥

윤 후 덕

전 정 희

기권 의원(9인)

강석훈

은 수 미

최 재 성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경 대 수 강석훈 강 창 희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김 광 림 길 정 우 김 광 진 김기식 김 기 준 김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미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주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 태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정 나 성 린 김 희 국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 영 문 정 림 문 대 성 문 병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수 현 박 상 은 박성 효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홍 근 박 창 식 박 혜 자 백 군 기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설 훈 성 완 종 송 광 호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혜 영 유기준 유기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유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이명수 이노근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 상 일 이 상 직 이석현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운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진 복 이 채 익 이철우 이춘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장 병 완 전 병 헌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수 성 정 우 택 정성호 정의화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호영 진 성 준 최 경 환 진 선 미 진 영 최봉홍 최 동 익 최 원 식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선 교 정 애 함 진 규 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황 영 철 홍 익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인자 황 진 하

반대 의원(2인)

강 창 일 노 영 민

기권 의원(16인)

김 민 기 민병주 박 완 주 문 재 인 송 영 근 신 학 용 우 윤 근 오 영 식 은 수 미 이에리사 임 수 경 전 순 옥 전정희 정진후 최 민 희 최 재 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2인)

강기유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은 희 권성동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기준 김기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주 김성 태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 태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길 김 김 한 표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희국 김희정 나 성 린 노 웅 래 노 철 래 류성 걸 도 종 환 지 영 문 대 성 류 문 희 상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박 기 춘 민병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원 석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후 성 완 종 송 광호 설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종 범 안 철 수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기준 유기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일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호중 윤 후 덕 이 만 우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 상 규 이 상 일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용 섭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유 석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주 영 이 종 진 이종훈 이진복 이 채 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 호 준 정희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현 룡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 동 익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처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지 만 황 영 철 황인자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김 민 기 박 민 수 은 수 미 홍 종 학 기권 의원(4인) 이미경 전 순 옥 전 정 희 최 민 희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3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은 희 김 관 영 권성동 길 정 우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동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선 동 김성 곤 김 성 주 김성 태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윤 덕 을 동 김 장 실 김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정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한 길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희 국 김 현 숙 김회선 김희정 노 영 민 나 성 린 노 웅 래 노 철 래 류 성 걸 문 대 성 도 종 환 류지 영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민병두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남 춘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수 혀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백 군 기 박 창 식 박 홍 근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설 훈 성 완 종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안 효 대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일호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유 재 옥 윤 호 중 윤 진 식 윤 후 덕 이 군 현 이노근 이 만 우 이명수 이미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석현 이 상 직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용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수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갑유 정성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호영 진 성 준 최경환 최 동 익 최민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정 애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지 만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김 민 기 박 민 수 전 순 옥 홍 종 학 기권 의원(3인)

김 혀 은 수 미 진 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41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준 김 동 완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선 동 김성 곤 김 성 주 김성 태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영 록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화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김 현 숙 김회선 혅 김 현 미 김희국 김희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문 병호 류지 영 문 대 성 민 병 두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명 재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용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청 워 성 완 종 송 광 호 설 후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염 동 열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진 식 윤 후 덕 이 군 현 이만우 이노근 이 명 수 이미경 이병석 이 상 민 이석혀 이완구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완 영 이 운 룡 이인제 이 워 욱 이 유 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유 석 전 하 진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회 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짓 영 최경환 최 동 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지 만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김 민 기 박 민 수 은 수 미 홍 종 학 기권 의원(2인) 이 상 직 전 순 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1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기 정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회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동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 민 기 김 선 동 김성 곤 김성주 김성 태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종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회선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국 김 희 정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류 성 걸 류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대 성 민병두 민병주 문 정 림 문 희 상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민 수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성 효 박 수 혀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홍근 박 혜 자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설 훈 성 완 종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민 송호창 신 경 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제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원 식 원 유 철 유 기 준 워 혜 영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노근 이 만 우 이명수 이 상 민 이미경 이 병 석 이 상 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인 영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훈 이종진 이 주 영 이채익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윤 석 전 병 헌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성 호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명철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호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화 최 동 익 최민희 최봉홍 최 재 성 한 명 숙 최 원 식 최 재 천 한 정 애 홍 문 종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7인)

강석훈 은수미 이상직 이원욱 장병완 전순옥 전정희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39인)

강 기 유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창 일 강 석 훈 강 창 희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명 연 김기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민 기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선 동 김성 곤 김 성 주 김성 태 김 영 록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쳙 김 현 숙 김 현 미 회 선 김 희 국 김 김희정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문 대 성 문 병호 문 재 인 류지 영 문 희 상 문 정 림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대 출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지 원 박 홍 근 백군기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설 훈 원 성 완 종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신 기 남 신 동 우 륜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홍 준 안 철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워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혜영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인 태 유 승 회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노근 이 만 우 이명수 이미경 이 병 석 이상민 이상직 이 상 일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우 택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 의 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선미 진 성 준 최경환 진 영 최동익 최봉홍 최 워 식 최 재 성 최 재 처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지 만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영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인 자 반대 의원(3인) 박 민 수 은 수 미 홍 종 학 기권 의원(3인)

백 재 현

전 순 옥

최 민 희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5인)

강기유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대수 권 은 희 권성동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기 식 김기준 김 김기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민 기 김 상 민 김 김 상 훈 성 곤 김성주 김선 동 김 김 승 남 영 록 김 영 우 김성 태 김 김 영 환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유 덕 김 을 동 김 장 실 재 경 김 재 원 김 김 재 윤 김 정 록 정 훈 김 제 남 김 김 태 원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혅 김 김회선 김희국 나성 린 김 희 정 노 영 민 남 경 필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창 식 박 홍 근 박지 원 박 혜 자 백군기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설 훈 성 완 종 송 광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기 남 신 계 륜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기준 유 승 민 유 대 운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일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유 재 옥 윤 영 석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노근 이 만 우 이명수 이미경 이 병 석 이 상 민 이석현 이에리사 이 상 일 이 상 직

이완구 이 완 영 이용섭 이 우 현 이운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장우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한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헌 전 해 철 정 우 택 정성호 정 수 성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조 현 룡 주 호 영 진 선 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동익 최규성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익 표 홍 영 표 홍 종 학 황 우 여 홍지 만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박민수 백재현 은수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29인)

강 기 유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광 림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태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종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한 길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노 웅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인 숙 박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군기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훈 성 완 종 송 광 호 설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신 경 민 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유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혜 영 원 유 철 유 대 운 유기준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이 군 현 이노근 이 만 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 상 민 이 상 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이 장 우 이자스민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한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수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문 헌 정 수 성 정 갑 윤 정성호 정 의 화 정 우 택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회 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옂 최 경 환 최 규 성 최 재 성 최 동 익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홍 종 학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전 정 희

기권 의원(14인)

장석훈 김민기 박민수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백재현 은수미 이상직 이 원 욱 전 순 옥 최 민 희 홍 의 락 한 정 애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36인)

강 기 유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기준 김 동 완 김 미 희 김 동 철 김 명 연 김민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선 동 김성 곤 김성주 김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재 원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재 경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한 길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선 김희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영 문 재 인 문 대 성 문 병 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두 민 병 주 민 혀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범 계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워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부 좌 현 변 재 일 서 영 교 서 기 호 서병수 서 상 기 서용교 서 청 워 설 훈 성 완 종 송광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유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승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재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관 석 윤 재 옥 윤 영 석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만 우 이 노 근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민 이 미 경

이 상 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용 섭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수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해 철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하 진 정 문 헌 정 갑 윤 정성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정 회 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해 진 조 현 룡 조 원 진 조 정 식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경환 진 영 최규성 최 동 익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영 표 홍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3인)

박 민 수 은 수 미 홍종 학

기권 의원(7인)

김 제 남 백 재 현 이상직 안 효 대 전 순 옥 최 민 희 홍 의 락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40인)

강 기 정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 동 철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선 동 김성주 김성 곤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정 훈 김정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태 호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선 김희국 김 희 정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류성걸 문 대 성 도 종 환 류지 영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대 출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지 원 박 창 식 박 혜 박 홍 근 백 군 기 자 부 좌 현 변 재 일 서기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용교 서 청 원 서 영 교 설 훈 성 완 종 송 광 호 송 영 근 송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여 상 규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승우 유승회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이미경 이노근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운룡 이 원 욱 이 유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철우 이 학 영 이학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 경 태 정 호 준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최경환 진선미 진 성 준 진 영 최규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한 명 숙 홍 문 종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0인)

강석훈 남인순 박민수 박완주 백재현 은수미 이상직 전순옥 전정희 홍의락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 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39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은 희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미 희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성주 김 선 동 김세연 김 영 록 김성 태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진 태 김 종 훈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태 원 김 태 화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희국 김회선 김 희 정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문 대 성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병두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홍 근 백군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설 훈 성 완 종 송 광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종 범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인 태 유일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노근 이 만 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 상 민 이 상 일 이상직 이에리사 이 완 영 이용섭 이 우 혀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 재 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 주 영 이진복 이종훈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현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순 옥 장 윤 석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문헌 정성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희수 조 경 태 정호준 조명철 조 해 진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성 준 진선미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 동 익 최봉홍 최 원 식 최 재 성 한 선 교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지 만 홍 영 표 홍 익 표 홍종 학 황 영 철 황 진 하 황 우 여

기권 의원(8인)

강 석 훈 김 제 남 남 인 순 박 민 수 은 수 미 이석혀 최민희 홍 의 락 (조경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39인, 기권 의원 8인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준 김기 현 김동 완 김 민 기 김 명 연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혅 김 희 국 나성린 김회선 김희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화 류 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범 계 박 상 은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인 숙 박 창 식 박 지 워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기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성 완 종 송 광호 송 영 근 설 훈 신 경 림 송 호 창 신 경 민 신 계 륜 신 동 우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상 정 신 학 용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규 백 여 상 규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승 민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유 재 옥 윤 진 식 유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군 현 이노근 이 명 수 이 만 우 이미경 이병석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석현 이 완 영 이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 주 영 이종훈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추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장 병 완 임 내 현 임수경 장 유 석 전 정 희 전 순 옥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문 헌 정 수 성 정 갑 윤 정성호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현 룡 조 해 진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 동 익 최봉홍 최 민 희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의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이에리사 주 승 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동 완 김 기 준 김 기 현 김동철 김 명 연 김미희 김민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성 관 김 선 동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우 남 김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호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현 미 김 한 표 김 혅 김 현 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화 류 성 걸 문 병호 문 재 인 류지영 문 대 성 민 병 주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혀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주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형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설 후 성 완 종 송광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진 식 유 후 덕 이 군 현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명수 이병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주 영 이 종 진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차 이 허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장 병 완 임 수 경 전 순 옥 장 윤 석 전정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갑윤 정 문 헌 정성호 정 우 택 정 수 성 정진후 정 의 화 정 청 래 정 호 준 정회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승용 조 정 식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한 명 숙 최 재 천 한 정 애 홍 문 종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종 학 홍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김기식 은수미 이장우 최재성 홍익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4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창 회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 현 김 동 완 김동철 김 미 희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선동 성 곤 김성주 김 김세연 김성태 김 승 남 김 영 록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장 실 김 재 원 김정록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용 현 김 한 표 김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도 종 환 노 웅 래 노 철 래 류성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지 원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홍 근 박 혜 자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성완종 송 광 호 설 훈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양 승 조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유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기준 원 혜 영 유대운 유 승 민 유일호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유 후 덕 은 수 미 이 군 현 이 낙 연 이명수 이노근 이 만 우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석현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주 영 이종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한성 이 해 찬 이 헌 승 임 내 현 임 수 경 이 현 재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세균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 해 진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최 재 성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익 표 홍지 만 홍 문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9인) 강 창 일 김 기 준 김 영 우 김 제 남 이에리사 이 채 익 정 진 후 정희수 한 정 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23인)

강 길 부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림 김 관 영 김기식 김기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미 희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선 동 김성 곤 김성주 김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을 동 김 장 실 김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한 표 김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선 쳙 김 희 국 김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림 민 병 주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병 수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설 훈 성 완 종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기 남 신 경 림 신 계 륜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홍 준 안 종 범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대 운 유 승 우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인 태 유일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제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001)		

반대 의원(2인)

박민수 홍종학

기권 의원(9인)

남 인 순 문 재 인 신 경 민 은 수 미 이 목 희 이 인 영 이 학 영 최 재 성 홍 익 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2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회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기 식 김 동 완 김 기 준 김 기 현 김동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선 동 김성 곤 김성주 김세연 성 태 김 승 남 김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유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 경 필 도 종 환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류지 영 류 성 걸 문 대 성 문 정 림 박 기 춘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혀 주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홍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설 훈 성 완 종 신 경 림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유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종 범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유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유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만 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혀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인제 이장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자스민 이 주 영 이종진 이종훈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학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헍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몽 준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회 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경환 진 영 최규성 최 동 익 최봉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홍 영 표

반대 의원(2인) 박 민 수 홍 종 학 기권 의원(13인) 남 인 순 문 재 인 신 경 민 신 동 우 신 학 용 은 수 미 이 목 회 심 상 정 최 재 성 홍 의 락 이 인 영 최 민 희 홍 익 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3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림 김 관 영 김기식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성 곤 김선동 김 세 연 김성주 김성 찬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종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회선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희 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민 현 주 문 정 림 문 회 상 민병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주 선 박 원 석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설 훈 성 완 종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계 류 신기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오 병 윤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기준 유대운 유 승 민 유승우 유 일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윤 관 석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호 중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 상 일 이 석 혀 이 상 민 이 상 직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혀 이 운 룡 이 워욱 이 유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수 경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정희 정 몽 준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세 균 정 문 헌 정성호 정 수 성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 의 화 정희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주 영 순 조 현 룡 조 해 진 주 승 용 주호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민 희 최경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정 애 홍 문 종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종 학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신 경 민 은 수 미 이목회 최 재 성 홍 의 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기 준 김 기 식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명 연 김동철 김 미 회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상 민 김 선 동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영 록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을 동 김 재 윤 김정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한 표 김 김 태 환 쳙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희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도 종 환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훈

기권 의원(2인)

김 태 년 최봉홍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기 식 김기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미 희 김 동 철 김 명 연 김민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성주 김 선 동 김세연 김성 찬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태 원 김 태 환 김 진 표 김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나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철 래 노 웅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민 수 박 대 동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민 식 박 수 혐 박성호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혀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서 상 기 수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설 훈 성 완 종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계 륜 신 동 우 신 성 범 신 기 남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영 식 오 병 윤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승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일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낙 연 이 군 현 이 만 우 이노근 이명수 이목회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 상 민 이상직 이석현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이재 이 인 영 이 윤 석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학 영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차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갑윤 정 몽 준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명철 조 경 태 조 원 진 주 승용 주 영 순 조 해 진 조 현 룡 주 호 영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최경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홍 문 종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종 학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민병주 김 제 남 박성 효 전 순 옥 최 재 성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36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상 민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선동 김성주 김성 찬 김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우 남 김 영 주 김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 혀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홍 근 백 군 기 박 혜 자 백 재 현 부 좌 현 서 병 수 변 재 일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워 설 후 성 완 종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동 우 신 기 남 신 학 용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오 병 윤 염 동 열 우 상 호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인 태 유일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명수 이병석 이 상 민 이 상 일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혀 이 운 룡 이 워 욱 이 유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주 영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헌 승 이현재 인 재 근 임 내 혀 장 병 완 임 수 경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헌 정성호 정세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 규 성 최봉홍 최 동 익 최 원 식 최 재 성 한 명 숙 추 미 애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종 학 홍지만 황 우 여 황 영 철 황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김기식 김 제 남 남 인 순 이목희 최 민 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2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훈 강 창 일 강 창 희 권성동 경 대 수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기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선동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제 남 김 재 윤 김 종 훈 김 정 록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남 경 필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도 종 환 노 웅 래 노 철 래 류성 걸 문 정 림 류지 영 문 대 성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명 재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 범 계 박 수 혀 박성호 박성 효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창 식 백 재 현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서 병 수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설 훈 성 완 종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영 식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유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낙연 이 만 우 이병석 이노근 이상민 이 상 일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운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이장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종 진 이 주 영 이진복 이종훈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헌 승 임 수 경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정희 전 순 옥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문 헌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진후 정 호 준 정희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종 학 홍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김기식

기권 의원(12인)

김민기 김성주 문재인 박민수 안철수 은수미 이목희 정청래 진선미 최재성 홍문표 홍익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석 훈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림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선 동 김성주 김성 찬 김세연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정 록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선 김희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나성 린 노 영 민 노 웅 래 문 대 성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걸 문 희 상 문 재 인 문 정 림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명 재 박 대 출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성 효 박 수 현 박성호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홍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병 수 변 재 일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청 원 설 훈 성 완 종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용 심상정 안 규 백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홍 준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양 승 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승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일호 윤 관 석 유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호중 이 낙 연 윤 진 식 이노근 이 만 우 이병석 이 상 민 이 상 일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 완 영 이용섭 이 우 현 이 원 욱 이 운 룡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진 이종훈 이 종 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춘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수 경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정 희 전 순 옥 정 문 헌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호 준 정의화 정진후 정 회 수 조 해 진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 동 익 최 봉 홍 최 규 성 최 민 희 한 명 숙 최 재 성 추 미 애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10인)

강 동 원 김 기 식 김 혅 박 민 식 유 인 태 유 후 덕 은 수 미 이목희 정 청 래 홍 익 표

(이한성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실제 투표 의원 220인, 찬성 의원 210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0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기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 민 기

김선동 김성주 김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윤 김 장 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진 태 김 진 표 태 환 김 태 년 김 태 원 김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김 현 미 현 김 현 숙 김회선 김 희 국 김희정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희 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대 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 수 현 박성효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청 원 송 영 근 설 훈 성 완 종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동 우 신 기 남 신 의 진 신 학 용 신 성 범 신 장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종 범 안 홍 준 양 승 조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유 근 원 유 철 워 혜 영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은 혜 유 승 희 유인 태 유 일 호 윤 명 희 윤 관 석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영 이 재 오 李宰榮 이 종 걸 이 종 진 이 주 영 이 채 익 이종훈 이 찬 열 이 학 영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성 이 해 차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장 병 완 임 내 현 임 수 경 장 윤 석 전 병 헌 장 하 나 전 순 옥 전정희 전 해 철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용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재 성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7인)					
강 기 정	김 기 식	민 병 주	박 혜 자		
안 철 수	이 목 희	홍 익 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7인)

강 석 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은 희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기 식 김기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장 실 김 우 남 김 유 덕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도 종 화 류성걸 류지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후 설 성완종 송 영 근 신 경 민 신 경 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철 수 안 민 석 안 종 범 안 홍 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워 혜 영 유성엽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우 유 승 민 유승희 유 은 혜 유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노근 이 만 우 이 상 민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완 구 이 상 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와 영 이 용 섭 이 우 혀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영 이 재 오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해 차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정 희 수 조 원 진 조 경 태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영 순 주 호 영 조 현 룡 주 승 용 진 선 미 진성 준 진 영 최규성 최 민 희 최봉홍 최 동 익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강석훈 박민수 심윤조 이목희 최재성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0인)

강 길 부 강 기 정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희 강 석 훈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림 김기준 김기 현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미 희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윤 덕 김용 태 김 우 남 김 장 실 김 정 록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종 훈 김 태 원 김 진 태 김 진 표 태 년 김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선 김 희 정 남 경 필 김희국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지 영 문 재 인 류 성 걸 문 대 성 문 정 림 민 병 주 민 현 주 문 희 상

민홍철 박기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병 석 박 범 계 박 상 은 박 수 현 박 영 선 박성 효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성 완 종 송 영 근 설 훈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의 진 신 동 우 신 장 용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철 수 안 규 백 안 종 범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유기준 유 승 민 유대운 유 성 엽 유승우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승 희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후 덕 윤 재 옥 윤 호 중 윤 진 식 이 만 우 이 병 석 이상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한성 이 해 차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수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우 택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 호 준 정희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동 익 짓 영 최경환 최규성 최 민 희 최봉홍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인자 황 진 하 기권 의원(8인)

강 창 일

은 수 미

김기식

이노근

의원 220인, 기권 의원 8인임)

(최봉홍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박 민 수

이목희

심 윤 조

최 재 성

○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3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기식 김기준 김 기 현 김동 완 김 동 철 명 김 미 희 김 연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찬 김 세 연 김성 태 김 영 록 김 승 남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영 우 김 용 태 김 정 록 김 장 실 김 윤 덕 김 재 윤 김 제 남 김종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태 환 김 태 흠 김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혅 김회선 김 현 숙 김 희 국 김 희 정 남 인 순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도 종 환 노 철 래 류 성 류지 영 걸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워 석 박 주 선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혀 변 재 일 부 좌 혀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설 훈 성 완 종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장 용 신 동 우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유기준 유 대 운 유성엽 유승우 유 은 혜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유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낙연 이노근 이목회 이 만 우 이병석 이상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석현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에리사 이 원 욱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종 진 李 宰 榮 이 종 걸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재 성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회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기준 김 광 림 김 기 식 김기현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우 남 김 영 주 김용 태 김 유 덕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 선 김희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희 상 문 재 인 문 정 림 민병주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병 석 박 상 은 박 범 계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백 군 기 박 혜 자 박 홍 근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원 성 완 종 설 훈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용 심 재 권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은 수 미 윤 호 중 이 낙연 이 만 우 이병석 이 노 근 이목희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석현 이 완 영 이에리사 이 완 구 이용 섭 이 우 현 이운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장우 이 인 영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진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수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정 희 전 해 철 전 병 헌 정갑윤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성 호 정 의 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회 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영 진 최경환 최규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재 성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정 애 홍 문 종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종 학 홍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이종걸 전순옥

이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29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석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기 식 김 기 준 김기현 김 미 희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상 훈 김 성 주 김 민 기 김 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 태 김 우 남 김 영 주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현 김희국 김회선 김희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병 석 박 명 재 박 범 계 박 상 은 박 성 호 박성 효 박 수 혀 박 영 선 박 완 주 박인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서 청 송 영 근 워 훈 성완종 설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장 용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워 혜 영 유기준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은 혜 유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호중 유 후 덕 은 수 미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상 민 이병석 이상규 이 상 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혀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室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임 수 경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헌 정성호 정세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 해 진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영 최경환 진 성 준 진 최 동 익 최봉홍 최규성 최 민 희 추 미 애 한 명 숙 최 재 성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문표 홍 의 락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종 학 홍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장 하 나

안 종 범

기권 의원(5인)

김 제 남 박 원 석 심상정 이목회 정진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5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희 강석훈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기 식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상 훈 김 민 기 김성주 김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성 태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영 우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진 태 김 종 훈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태 원 태 흠 김 학 용 김 김 한 표 김 김 현 미 김 현 숙 현 김회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영 선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인 숙 박 창 식 박 혜 자 박홍근 백 군 기 재 혀 변 재 일 서 기 호 서병수 부 좌 현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훈 성 완 종 설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동 우 신 성 범 신 기 남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유기준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윤 진 식 은 수 미 이 낙연 이노근 이 만 우 이병석 이상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우 현 이 완 영 이 용 섭 이운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장우 이 인 제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학 영 이 채 익 이 춘 석 이 철 우 이 현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순 옥 정 몽 준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문헌 정 수 성 정성호 정세균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현 룡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종 학 홍지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김 제 남 노 웅 래 이목희 최봉홍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4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창 일 경 대 수 강석훈 강 은 희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동 철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세연 김성 찬 김성 태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용 태 김 영 우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환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희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성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성효 박 완 주 박 워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홍 근 백 군 기 박 혜 자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병수 서 영 교 서 상 기 설 훈 성 완 종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용 신 장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철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혜 영 유기준 유성엽 유 대 운 유 승 우 유승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일호 유 관 석 윤 명 희 유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목희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장우 이 재 영 이 재 오 李宰榮 이 종 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해 차 이 헌 승 이 혀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병 헌 장 윤 석 전 순 옥 전정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진후 정 청 래 정 의 화 정 호 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용 조 현 룡 주 영 순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쳙

영

최경환 최규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봉홍 추 미 애 한 명 숙 최 재 성 한 정 애 홍 문 종 한 선 교 함 진 규 홍문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6인) 민병주 박 상 은 서용교 유 승 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주 호 영

윤 진 식

찬성 의원(237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김 관 영 길 정 우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준 김 명 연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동 철 김미희 김 상 훈 김성주 김 민 기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재 윤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정 록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제 남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형 미 김 현 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영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홍근 백군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기 호 서 영 교 서용교 설 훈 성 완 종 송 영 근 신 계 륜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효 대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성 엽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유 후 덕 은 수 미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목희 이병석 이상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李宰榮 이종걸 이종훈 이 주 영 이종진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진 복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임 수 경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정 희 전 순 옥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몽 준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 호 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워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호영 진 선 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동익 최봉홍 최 규 성 최 민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종 학 홍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은 희 김 관 영 권성동 길 정 우 김기식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준 김 동 완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민기 김성 찬 김 미 희 김 상 훈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영 우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현 미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진 김기식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명 연 김 동 완 김 미 희 김 민 기 김성주 김 상 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윤 정 록 김 제 남 김 장 실 김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현 숙 김 회 선 김 김희국 김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노 영 민 노 철 래 류 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민 병 주 문 정 림 문 희 상 민 현 주 박 기 춘 민 홍 철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영 선 박 수 혀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창 식 박 주 선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병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성 완 종 서용교 설 훈 송 영 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경 림 신 경 민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혜 영 유기준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은 수 미 이 낙 연 윤 후 덕 이노근 이 만 우 이목희 이병석 이상규 이 상 직 이석현 이 언 주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완 영

이 용 섭

이운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 재 영 李室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인 재 근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전 해 철 정 갑 윤 회 정 몽 준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정희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선미 진 성 준 최경환 진 영 최규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재 성 추 미 애 한 선 교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종 학 홍지 만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 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4인)

황 진 하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석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길 정 우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동철 김 명 연 김성주 김 미 희 김민기 김 상 훈 김 영 록 김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종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한 표 김 희 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문 대 성 문 재 인 류지 영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민 수 박 범 계 박 명 재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군기 재 혀 변 재 일 백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성 완 종 설 훈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홍 준 양 승 조 안 철 수 안 효 대 염 동 열 오 병 윤 여 상 규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유 근 워 유 철 원혜영 유기준 유성엽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은 혜 유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낙연 이 만 우 이노근 이목회 이 병 석 이상규 이 상 민 이 언 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혀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원 욱 이 운 룡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 철 우 이 추 석 이 한 성 이현재 이 헌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임수경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몽 준 정 문 헌 정 갑 윤 정성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세균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정희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현 룡 조 해 진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성준 진 옂 최경화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워 식 최 재 성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정 애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우 여 홍 종 학 홍지 만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유 승 우

기권 의원(4인)

김 현 미 주 영 순 김 성 찬 신 계 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4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석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기식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진 김 동 완 김 기 준 김 명 연 김 동 철 김무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화 김 태 흠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남 인 순 도 종 환 노 철 래 류 성 걸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홍철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민 수 박 상 은 박성호 박 범 계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홍 근 박 창 식 박 혜 자 배 재 정 백군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후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기 남 신 의 진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제세 우 상 호 우 유 근 원 혜 영 유대운 유성엽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후 덕 윤 재 옥 윤 호 중 은 수 미 이 낙연 이노근 이 만 우 이목회 이병석 이상규 이 상 민 이 상 직 이 언 주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이재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인 제 이 재 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재 이 헌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문 헌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청 정 호 준 정 래 정희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승용 조 정 식 조 현 룡 주 영 순 주호영 진 선 미 진 영 최 동 익 최경환 최규성 최 민 희 최봉홍 최 워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홍 문 종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은 회 권성동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동 완 김 기 준 김동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미 희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종 훈 김 제 남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학 용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국 김 회 선 김 희 정 나 성 린 남 인 순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류지 영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현 주 민 병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남 춘 박 민 수 박 상 은 박성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훈 설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종 범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유 기 준 유대운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재 옥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이 낙 연 윤 호 중 은 수 미 이 노 근 이 목 회 이 만 우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언 주 이 상 민 이 상 직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용섭 이 우 혀 이운룡 이 원 욱 이이재 이 윤 석 이인영 이 재 영 李宰榮 이인제 이 재 오 이 주 영 이 종 걸 이 종 진 이진복 이 찬 열 이채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한성 이 헌 승 이현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윤 석 전 순 옥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우 택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경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최경환 진선미 진 옂 최 민 희 최 봉 홍 최규성 최동익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종 학 홍지 만 황인자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 후 덕

투표 의원(224인)

오 병 윤

찬성 의원(195인)

강 길 부 강 동 워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회 강 창 일 권 성 동 경 대 수 권 은 희 김 관 영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재 윤

장 병 완

김 정 록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한 표 김 회 선 김 희 국 김희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류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림 문 희 상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상 은 박성호 박 주 선 박수 현 박 인 숙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배 재 정 부 좌 현 서 병 수 백 재 현 서 상 기 송 영 근 서 영 교 설 훈 신 경 림 신 기 남 신 계 륜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장 용 신 학용 심 재 권 신 의 진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양 승 조 안 홍 준 안 효 대 오 병 윤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유 기 준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민 유승우 유 인 태 유일호 유 승 희 유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은 수 미 이 낙연 이 만 우 이목희 이병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직 이석현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혀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인제 이 인 영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채익 이 학 영 이 철 우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병 헌 장 윤 석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경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최경화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홍 문 종 한 선 교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종 학 홍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9인)

강 기 정

이노근

함 진 규

도 종 환

이 언 주

문 재 인

장 하 나

박 원 석

정진후

기권 의원(20인)

김 제 남 김기식 김성주 김 윤 덕 민병주 민 현 주 박 민 수 김 현 숙 박 범 계 서 기 호 신 경 민 심 상 정 심 윤 조 여 상 규 유 은 혜 이에리사 이한성 전 순 옥 전 해 철 한 정 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19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석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기준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동 철 김 미 희 김성주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찬 김성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영 우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록 김종훈 김 제 남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홍철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영 선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재정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훈 신 경 림 신 경 민 설 신계류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유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병 윤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일 호 유 인 태 윤 명 희 윤 관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 상 민 이 병 석 이 상 규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우 혀 이 완 영 이 용 섭 이운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인 영 이이재 이인제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헌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순 옥 전 해 철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우 택 정성호 정 수 성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정희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영 최경환 진 선 미 진 최동익 최 봉 홍 최규성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홍 문 종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종 학 황 영 철 홍지 만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6인)

(류성걸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219인, 기권 의원 6인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2인)

강 길 부 강 기 정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찬 김성 태 김 승 남 김 영 주 김 영 록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록 김종훈 김 제 남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국 나 성 린 남 경 필 김 회 선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걸 류지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민 현 주 문 희 상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병 석 박 범 계 박 상 은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훈 송 영 근 설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장 용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안 규 백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영 식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유 근 워 혜 영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대 운 유 승 우 유 은 혜 유인 태 유 승 회 유 일 호 윤 재 옥 윤 관 석 윤 명 희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낙 연 이병석 이노근 이 만 우 이목회 이상규 이 상 민 이상직 이석현 이 우 혀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 주 영 이 종 걸 이 종 진 이종훈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수경 장 병 완 장 유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해 철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최 규 성 최경환 최동익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의 락 홍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박성호 김 영 우 박 인 숙 이에리사 기권 의원(7인) 김세연 김희 정 민병주 서 병 수 이 채 익 이 한 성 최 민 희 (박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김희정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12인, 반대 의원 4인, 기권 의원 7인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광 진 김기식 김 김기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승 남 김 윤 덕 김용 태 김 우 남 김 재 경 김정록 김 종 훈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진 표 김 태 원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희국 김희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노 영 민 노 철 래 류 성 걸 류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대 출 박 상 은 박성호 박 수 혀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홍 근 박 혜 자 배재정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서 상 기 설 송 영 근 훈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성 범 신 동 우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제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성엽 유승우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유 재 옥 윤 후 덕 이노근 윤 호 중 이 낙연 이목회 이 만 우 이병석 이상규 이 상 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혀 이 용 섭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영 이 종 걸 이 종 진 이 주 영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한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수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갑유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정희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호영 진 선 미 진 영 최 동 익 최경환 최 민 희 최 규 성 최봉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종 학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박 민 수 원 혜 영 은 수 미 (류지영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21인, 기권 의원 3인임)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5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회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용 태 김 윤 덕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흠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희국 김희정 노 영 민 노 웅 래 남 경 필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걸 류지 영 민병주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현 주 민홍철 박기춘 박 남 춘 박 병 석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민 수 박 상 은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병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용 심 윤 조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제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유기준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이 낙연 윤 호 중 이노근 이 만 우 이병석 이 상 민 이 상 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와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인영 李宰榮 이인제 이 재 오 이종훈 이 종 걸 이 종 진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채익 이 학 영 이 철 우 이 한 성 이 헌 승 이현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전 병 헌 장 병 완 장 유 석 장 하 나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우 택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진후 정청래 정 의 화 정 호 준 정 회 수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호영 진 선 미 최경환 진 옂 최 규 성 최동익 최 봉 홍 최 민 희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조 경 태

기권 의원(7인)

김 경 협 김 기 식 남 인 순 은 수 미 이 목 희 홍 영 표 홍 익 표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4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기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 승 남 김 영 록 김성 찬 김세연 김 영 우 김용 태 김 우 남 김 영 주 김 유 덕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희국 나 성 린 남 경 필 김 희 정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류지 영 도 종 환 문 재 인 류 성 걸 민병주 민 현 주 문 정 림 문 희 상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민 수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인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부 좌 현 백 재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송 영 근 훈 신 경 림 신 경 민 설 신 계 륜 신 의 진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장 용 심 재 권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윤 근 워 혜 영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은 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병석 이 상 민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주 영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 학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한성 이 헌 승 이현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호영 진 선 미 최경환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홍 문 종 홍 영 표 함 진 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안 홍 준 기권 의원(8인) 김 경 협 유 인 태 은 수 미 이목회 이상직 전 순 옥 정청래 홍 익 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기 정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희 경 대 수 권 은 희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동 철 김무성 김 미 희 김 상 훈 김 민 기 김성주 김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정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워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희국 김 현 숙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웅 래 노 영 민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민 수 박 병 석 박 명 재 박 상 은 박성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인 숙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병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의 진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성 범 신 학 용 신 장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워 혜 영 유 대 운 유 기 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승 우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이 낙 연 이 만 우 윤 후 덕 이노근 이 석 현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이재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인 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진 이 주 영 이진복 이종훈 이 학 영 이 찬 열 이채익 이 철 우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혀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해 철 정갑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 진 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영 진 최경환 최 민 희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 워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정 애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홍 지 만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2인)

김광진 안홍준

기권 의원(13인)

강 창 일 김 경 협 김 재 경 김 희 정 남 인 순 유 승 희 유 인 태 은 수 미 이 목 희 이 상 직 이 종 걸 전 순 옥 홍 익 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표 입임(2420)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은 회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김 광 림 길 정 우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태 김 세 연 김 영 주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유 덕 김 재 경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나 성 린 김 회 선 김 희 국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 현 주 박 남 춘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혀 부 좌 혀 서 병 수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설 후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원 혜 영 우 윤 근 유 기 준 유대운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일호 유 승 우 유 승 희 유 관 석 유명희 윤 영 석 유 재 옥 윤 후 덕 이 낙연 이노근 윤 호 중 이 석 현 이 만 우 이병석 이 상 민 이 언 주 이 완 영 이에리사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장 병 완 임 내 현 임 수 경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정 희 장 하 나 전 해 철 정 문 헌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정 회 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진 선 미 진 영 최경환 최 규 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추 미 애 한 명 숙 최 원 식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안 홍 준

기권 의원(16인)

강 창 일 김 경 협 김 광 진 김성 찬 김희정 남 인 순 박 민 수 유 인 태 이목회 은 수 미 이상직 이종걸 인 재 근 전 순 옥 주 호 영 홍 익 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길 정 우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무 성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문 재 인 류 성 걸 류지 영 문 정 림 민홍철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남 춘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 인 숙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군기 서 병 수 백 재 쳙 부 좌 현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성 범 신 학 용 신 의 진 신 장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재권 안 규 백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유기준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일 호 윤 관 석 유 인 태 윤 호 중 윤명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은 수 미 이 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병석 이 상 민 이 상 직 이석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운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 주 영 이종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한성 이 철 우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정 희 정 문 헌 전 해 철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 우 택 정의화 정 청 래 정호준 정 희 수 조 해 진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현 룡

진 선 미 주 영 순 주 호 영 영 진 최 동 익 최경환 최규성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한 명 숙 추 미 애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익 표 홍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박 원 석 김 제 남 정 진 후 조 경 태 기권 의원(6인) 김 현 숙 민 현 주 민 병 주 서 기 호 송 영 근 이에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6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은 희 권성동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우 영 주 김 영 록 김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회선 김희 정 나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도 종 환 노 철 래 류성 걸 류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대 동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병 석 박 범 계 박 상 은 박성호 박 수 혀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서 상 기 설 훈 송 영 근 신 경 민 신 경 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유 기 준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대운 유성엽 유 승 민 유승우 유 승 회 유인 태 유 일 호 유 은 혜 윤 관 석 윤 영 석 윤 재 옥 윤 명 희 유 호 중 유 후 덕 은 수 미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 병 석 이 상 민 이상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운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인 영 이인제 이이재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한성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수경 장 병 완 장 유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순 옥 전정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문 헌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 진 후 정청래 정 호 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최경환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동 익 최봉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익 표 홍지만 홍 영 표 홍 의 락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성주 이목회

(김현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6인, 기권 의원 2인임)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주 김세연 김성 찬 김성 태 김 영 주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경 김 재 유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정 김 회 선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문 재 인 도 종 환 류성걸 류지영 문 희 상 민 병 주 문 정 림 민 현 주 박 기 춘 민홍철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홍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병수 서 상 기 서 영 교 송 영 근 신 경 림 설 훈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장 용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유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오 병 윤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은 혜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유 재 옥 유 호 중 유 후 덕 은 수 미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병석 이목회 이 상 민 이상직 이 언 주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혀 이 용 섭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 주 영 이종훈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문 헌 정성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경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동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인자 황 진 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김 광 림 길 정 우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무성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찬 김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종 훈 김 태 원 김 학 용 김 진 태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 정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걸 류지 영 민병주 민 현 주 문 정 림 문 희 상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명 재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 효 박 수 현 박인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백 군 기 박 혜 자 박 홍 근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손 인 춘 서 상 기 서 영 교 훈 설 송광호 송 영 근 신 경 민 신 경 림 신 동 우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민 유승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인 태 유일호 윤 후 덕 윤 관 석 윤명희 윤 상 현 이 낙 연 이노근 이목회 이병석 이 상 민 이상직 이 언 주 이석현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채익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해 철 정 몽 준 정 문 헌 정 성 호 정세 균 정 우 택 정 수 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 해 진 조경태 조 원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호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정 애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홍지 만 황 우 여 홍 익 표 황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6인) 김 미 희 김 민 기 남 인 순 박 민 수 전 순 옥 오 병 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199인)

강 은 희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관 영 김기준 김 명 연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성 태 김 영 록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경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희 정 남 경 필 김 현 숙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림 민 현 주 문 회 상 민홍철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동 우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종 범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은 혜 유 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상 현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낙연 이노근 이 만 우 이 병 석 이 상 민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운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주 영 이 종 진 이종훈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한 성 이 헌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정희 전 해 철 정몽준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 청 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진 선 미 영 진 성 준 진 최경환 최규성 최 동 익 최봉홍 최 워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정 애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익 표 홍지 만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3인)

박원석 장하나 정진후

기권 의원(9인)

김광진 김기식 민병주 안철수 유승희 이목희 李宰榮 최민희 홍의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은 회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기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관 김성주 김성 찬 김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훈 김 태 원 김 진 태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희 정 김 현 미 김 현 숙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재 인 문 희 상 민 현 주 문 정 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병수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손 인 춘 설 훈 송 광호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종 범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병 윤 오 영 식 염 동 열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승우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상 현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낙연 이 만 우 이목회 이병석 이노근 이 상 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완 영 이운룡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원 욱 이 인 제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찬 열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유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 호 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호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지만 황 우 여 황인자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진표 민병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28인)

강 길 부 강석호 강 은 희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성 곤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장 실 김 종 훈 김 태 환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희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웅 래 노 철 래 문 희 상 류 성 걸 류지 영 문 정 림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인 숙 박 창 식 백 군 기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민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종 범 안 홍 준 아 효 대 여 상 규 우 상 호 염 동 열 오 제 세 우 윤 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우 유 일 호 윤 영 석 윤 명 희 윤 재 옥 이 낙연 이노근 이 만 우 이병석 이상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인 제 이 운 룡 이이재 이 주 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헌 정성호 정세균 정 수 성 정의화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호 영 진 옂 최경화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51인) 김 광 진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창 일 김 민 기 김 기 식 김기준 김 미 희 김 우 남 김 재 윤 김 현 미 남 인 순 도 종 환 문 재 인 박 민 수 박 원 석 박 혜 자 박 홍 근 서 영 교 신 계 륜 신 기 남 심상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양 승 조 오 병 윤 유 대 운 유 은 혜 윤 관 석 윤 호 중 유 후 덕 이목회 이 윤 석 이 인 영 이 재 오 이 학 영 임 수 경 장 하 나 전 순 옥 정 호 준 정진후 정청래 정 희 수 진 선 미 진 성 준 최 원 식 추 미 애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기권 의원(24인)

김 제 남

박 병 석

김 성 찬

박 범 계

김 태 년

박 주 선

김성주

박 남 춘

백 재 현 신 학 용 설 훈 신 경 림 오 영 식 유 승 민 유 승 희 유인 태 이 원 욱 이 상 민 전 정 희 이 종 걸 전 해 철 조경태 한 명 숙 최민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4인)

강 기 정 강 동 원 강석호 강 길 부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민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 찬 김세연 김성주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우 남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재 윤 김 장 실 김 제 남 김 종 훈 김 태 년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정 나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도 종 환 노 웅 래 류성 걸 류지영 문 정 림 민 병 주 문 재 인 문 희 상 민 혀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주 선 박 인 숙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기 호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광호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여 상 규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 기 준 유성엽 유 대 운 유 승 민 유승우 유 은 혜 유 승 희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낙 연 이 만 우 이노근 이목회 이병석 이 상 민 이상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이재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인 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훈 이 주 영 이종진 이 학 영 이 철 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몽준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진후 정청래 정 호 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 원 진 주 호 영 조 해 진 조 현 룡 진선미 진 최경환 진 성 준 영 최동익 최 봉 홍 최규성 최 민 희 최 워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우 여 황인자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유 인 태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4인)

강 석 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회 길 정 우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회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 영 우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종 훈 김 제 남 김 진 태 김 학 용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웅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림 민홍철 문 희 상 민병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원 석 박인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손 인 춘 설 후 송 광 호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학 용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오 병 윤 안 효 대 염 동 열 우 상 호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이 낙연 이노근 이 만 우 이 상 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이재 이 윤 석 이 인 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훈 이 주 영 이 종 진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정 갑 윤 정 문 헌 전 정 희 정성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정희수 조 경 태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 민 희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황 우 여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김경협 남인순 이목희 전해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길 정 우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광림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영 록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류성걸 류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림 민 병 주 문 희 상

민 현 주 민홍철 박기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혀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서 병 수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훈 손 인 춘 설 송 광 호 신 경 신 경 민 신 계 륜 림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신 장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우 상 호 우 윤 근 세 유기준 유성엽 유 대 운 유 승 민 유승우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승 희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후 덕 윤 재 옥 윤 호 중 이 낙연 이 만 우 이목회 이노근 이상직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주 영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허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짓 영 최경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민희 추 미 애 최 봉 홍 최 원 식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익 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나 성 린

(진선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3인, 기권 의원 1인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5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경 김 관 영 김 협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준 김 무 성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영 주 김 우 남 김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제 남 태 년 김 태 원 김 종 훈 김 진 태 김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나성린 김희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류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림 류 성 걸 문 희 상 민병주 현 주 민홍철 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 효 박 수 현 박성호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군기 백 재 쳙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손 인 춘 설 훈 송 광 호 신 경 림 신 계 륜 신 경 민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종 범 안 철 수 양 승 조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낙 연 이노근 이만우 이목회 이 상 민 이 상 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혀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 주 영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 찬 열 이 학 영 0 철 우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호 준 정의화 정 진 후 청 정 래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조 해 진 최경환 진선미 진성준 진 옂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규성 최 위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유 대 운

기권 의원(1인)

황인자

(문정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5인, 반대 의원 1인, 기권 의원 1인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8인)

강 은 희 강 기 정 강 길 부 강석호 강 창 일 권 은 희 경 대 수 권성동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기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민 기 김 미 회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유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류지 영 도 종 환 류성 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홍철 박기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혀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병수 서 상 기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설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 기 준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민 유승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일 호 유 인 태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상 현 유 재 옥 유호중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 상 민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주 영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현재 임 수 경 이 헌 승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균 정 수 성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 명 철 조 경 태 조 해 진 주 승용 조 원 진 조 현 룡 주호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민 희 최경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홍 문 종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영 표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인자 황 진 하

반대 의원(2인)

강동원 홍의락

기권 의원(4인)

윤후덕 이상직 전순옥 전해철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88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희 강 창 일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광 림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진 김기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훈 김성주 김성 곤 김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재 윤 김 장 실 김 제 남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종 훈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 정 나성린 남 인 순 노 웅 래 남 경 필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원 석 박인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동 우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성엽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이 낙연 윤 호 중 이 만 우 이노근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종 진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장 병 완 임 수 경 장 윤 석 전 해 철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영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6인)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재 연 오 병 윤 유 승 민 정 회 수 기권 의원(10인) 민병주 박 대 동 백 재 현 서 병 수 유 대 운 이 상 민 이 상 직 이 언 주 이종훈 홍 의 락 (김재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반대 의원 6인, 기권 의원 10인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창 일 경 대 수 강 은 희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준 김 무 성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영 주 김 우 남 김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제 남 김 태 원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혅 나 성 린 김 현 숙 김 현 미 김희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철 래 류성 걸 류지 영 문 병호 도 종 환 문 재 인 문 정 림 민병주 문 희 상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대 동 박 명 재 박 범 계 박성호 박 수 현 박 상 은 박성효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홍 근 박 혜 자 백 군 기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손 인 춘 설 훈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기 남 신 계 륜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종 범 안 민 석 아 철 수 아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은 혜 유 승 희 유 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유 재 옥 윤 호 중 유 후 덕 이 낙 연 이노근 이만우 이 상 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혀 이운룡 이이재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인 영 이 인 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주 영 이종진 이 진 복 이 찬 열 이 학 영 한 성 이 헌 승 이 철 우 0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문 헌 정성호 정 정세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희 수 조명철 정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조 원 진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귀 이의(2이)					

기권 의원(3인)

백재현 송광호 이종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2인)

강 석 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준 김 기 식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영 우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나 성 린 남 경 필 김 희 정 남 인 순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걸 류지영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신 경 림 신 기 남 신 경 민 신계류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장 용 신 학 용 신 의 진 심 상 정 심 유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민 유승우 유 은 혜 유 승 희 유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호 중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이 만 우 이 낙 연 이노근

이 상 민 이 상 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 주 영 이종훈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정 희 전 순 옥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 수 성 정의화 정청래 정 세 균 정희수 정 호 준 조 명 철 조 원 진 주 호 영 조 현 룡 주 승용 조 해 진 진 선 미 진성준 진 옂 최경환 최동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규 성 추 미 애 한 명 숙 최 원 식 한 선 교 현 영 희 홍 문 종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인자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유기준 정진후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희 강 창 일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동 철 김 상 훈 김 민 기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영 우 김 우 남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김 현 미 혅 김 현 숙 김희정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문 병호 류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림 민 병 주 문 희 상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상 은 박성호 박 원 석 박성효 박 수 현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병수 서 상 기 서 영 교 송 광호 설 훈 손 인 춘 신 경 림 신 경 민 신 동 우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승희 유 은 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후 덕 윤 재 옥 윤 호 중 이 낙 연 이노근 이만우 이 상 민 이상직 이석현 이 완 영 이 우 현 이운룡 이 윤 석 이 원 욱 이이재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인 제 李宰榮 이종걸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학 영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수경 장 병 완 장 유 석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명 철 조 현 룡 조 원 진 주 승용 조 해 진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화 최 동 익 최 규 성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영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유인 태 이 언 주 전 순 옥 최봉홍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2인)

홍 의 락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미 희 김민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재 윤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나 성 린 남 경 필 김희정 남 인 순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화 류 성 걸 류지 영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후 손 인 춘 송 광 호 신 경 민 신 경 림 신 계 륜 신 기 남 신성 범 신 장 용 신 동 우 신 의 진 신 학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홍 준 안 철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영 식 여 상 규 오 병 윤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유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민 유승우 유 은 혜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윤 명 희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영 석 윤 호 중 유 재 옥 유 후 덕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상 민 이 상 직 이석혀 이에리사 이 와 영 이 우 혀 이 운 룡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정희 전 해 철 정갑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균 정 수 성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 민 희 최 봉 홍 한 명 숙 최 원 식 추 미 애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황 인 자

기권 의원(4인)

김 기 준 이 언 주 전 순 옥 홍 의 락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88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준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동 완 김무성 김 미 희 김민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세연 김 승 남 김 성 찬 김 영 록 김 우 남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장 실 김 제 남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종 훈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혅 김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지 영 류 성 걸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홍철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대 출 박 명 재 박 상 은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성호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재 현 백 군 기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후 손 인 춘 송 광 호 신 경 림 신 경 민 신계류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영 식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대운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인 태 유일호 유 관 석 윤명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유 후 덕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 상 민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와 영 이 운 룡 이 워 욱 이 유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李宰榮 이 재 오 이 주 영 이종걸 이종진 이 학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철우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순 옥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세균 정 의 화 정성호 정수성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성준 최경환 최 동 익 진 영 최규성 최봉홍 최 워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영 표 홍 의 락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반대 의원(1인) 김기식

기권 의원(6인)

남인순 신장용 안철수 이언주 최민희 홍익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은 희 강 동 원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광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명 연 김 미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우 남 김 영 주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제 남 김 재 윤 김 종 훈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정 나성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성호 박 수 현 박 주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서 병 수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훈 손 인 춘 송 광호 설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성 범 신 동 우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오 병 윤 우 윤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인 태 유 일 호 윤 상 현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노근 이 만 우 이 낙 연 이 상 민 이 언 주 이 상 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갑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수성 정의화 정 진 후 정 호 준 정청래 정희수 조명철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조 현 룡 진 선 미 최경환 진성준 진 영 최 동 익 최 원 식 최규성 최 민 희 추 미 애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황 영 철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우 여 황인 자

기권 의원(1인)

심 재 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회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미 희 김민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우 남 김 영 주 김 장 실 김 재 연 김 태 원 김 재 윤 김 종 훈 김 태 화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민병주 문 정 림 문 희 상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수 현 박성호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병 수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손 인 춘 설 훈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제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노근 이 낙 연 이 만 우 이 상 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운룡 이 원 욱 이인영 이 윤 석 이이재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찬 열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윤 석 전 정 희 전 병 헌 전 순 옥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의 화 정 수 성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 명 철 조 원 진 주 호 영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 동 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규 성 한 명 숙 최 원 식 추 미 애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기권 의원(1인)

김 제 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7인)

강 기 정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김 경 협 길 정 우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준 김 기 식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종 훈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희 정 김 혅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지 영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현 주 민병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서 병 수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훈 손 인 춘 설 송광호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상정 심 재 권 심 윤 조 안 종 범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철 수 여 상 규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대운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승 우 유승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낙연 이노근 이 만 우 이석현 이 상 민 이 상 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李室榮 이재오 이종걸 이 종 진 이 주 영 이진복 이 종 훈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순 옥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규성 진 영 최경환 최 동 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인자

기권 의원(1인)

신 계 륜

(나성린·장윤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7인, 기권 의원 1인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9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광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기준 김 동 완 김동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세연 김 영 록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장 실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재 연 김 종 훈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현 숙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김희정 노 철 래 도 종 환 노 웅 래 류 성 걸 류지 영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민병주 민홍철 문 희 상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대 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명 재 박성호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재 현 백 군 기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후 손 인 춘 송 광 호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용 신 의 진 신 장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대운 유 승 민 유승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낙연 이 만 우 이 상 민 이 노 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워 욱 이 윤 석 이인영 이이재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문 헌 정세 균 정 갑 윤 정 성 호

정 수 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 호 준 조명철 정희수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승용 주 호 영 조 현 룡 진 선 미 진 성 준 영 최경환 진 최규성 최 동 익 최봉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기권 의원(2인)

심 재 권 최 민 희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석호 강 동 원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상 훈 김성 관 김 민 기 김성 찬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우 남 김 장 실 김 영 주 김 재 연 김 종 훈 김 재 윤 김 제 남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문 병호 문 재 인 류성걸 류지 영 민 현 주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원 석 박인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백 군 기 박 혜 자 박 홍 근 백 재 현 부 좌 현 서기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설 후 손 인 춘 송 광 호 신 경 림 신 기 남 신 경 민 신 계 륜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홍 준 안 종 범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기준 유 승 우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일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군 현 윤 호 중

이노근 이 만 우 이 상 민 이상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석혀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종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균 정 수 성 정의화 정진후 정 청 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주 승용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호 영 진 선 미 진성준 진 영 최 민 희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현 영 희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인자

기권 의원(2인)

김성주 서 영 교

○국군부대의「국제연합 레비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7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석호 강 은 희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장 실 김 재 윤 김 태 원 김 학 용 김 종 훈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김 현 숙 김희정 남 경 필 노 웅 래 노 철 래 류 성 걸 문 병호 류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림 민 병 주 문 희 상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병 석 박 명 재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 현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광호 신 경 림 신 기 남 신 경 민 신 계 륜 신 동 우 신 의 진 신 학 용 신 성 범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우 상 호	우 윤 근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인 제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장 윤 석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반대 의원((13인)						
강 동 원	강 창 일	김 기 식	김 미 희				
김 재 연	김 제 남	남 인 순	박 원 석				
서 기 호	안 민 석	오 병 윤	이 상 민				
정 진 후							
기권 의원(기권 의원(10인)						
김 기 준	김 태 년	도 종 환	부 좌 현				
신 장 용	심 상 정	오 영 식	오 제 세				
전 순 옥	조 해 진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79인)

강석호 강 은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김 광 림 길 정 우 김 광 진 김 기 식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세연 김성 찬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종 훈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태 년

김 한 표 김 김 현 미 김 현 숙 혅 남 경 필 김희정 노 웅 래 노 철 래 류성 걸 문 병호 도 종 환 류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운 백 군 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송 광호 설 훈 손 인 춘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종 범 안 철 수 양 승 조 안 홍 준 여 상 규 염 동 열 우 상 호 오 제 세 우 윤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은 혜 유 승 희 유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유 영 석 유 재 옥 유호중 유 후 덕 이 군 현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 상 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 이 제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수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희수 정청래 정호준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준 진 옂 최경환 최 규 성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의 락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반대 의원(13인)

강동원 강창일 김미희 김재연 김제남 남인순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안민석 오병윤 이상민 정진후

기권 의원(7인)

강기정 김경협 김기준 부좌현 오영식 전순옥 최동익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 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무성 김 민 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장 실 김 종 훈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 정 남 경 필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문 병호 류성걸 류지영 문 재 인 민 병 주 문 정 림 문 희 상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성효 박 주 선 박 수 혀 박 인 숙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기운 백군기 서 병 수 백 재 형 부 좌 현 서 상 기 서 영 교 훈 손 인 춘 송광호 설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윤 조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상 호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은 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유 호 중 유 후 덕 이 군 혀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 상 민 이 상 직 이석현 이 완 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 인 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종진 이 주 영 이종훈 이진복 이 찬 열 이철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순 옥

전정희 전 해 철 정 문 헌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의화 조명철 정호준 정희수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최경환 최규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영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반대 의원(9인) 김 광 진 김 미 희 김 재 연 김 제 남 박 원 석 서 기 호 오 병 윤 정진후 진 성 준 기권 의원(6인) 남 인 순 유 승 희 유 인 태 정 청 래 홍 의 락 홍 익 표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성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기식 김기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 미 희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 찬 김세연 김성주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우 남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종 훈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혅 김 현 미 김 현 숙 김희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 걸 류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병주 민 현 주 민홍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병 석 박 범 계 박 상 은 박 성 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워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기운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병수 서 상 기 서 영 교 손 인 춘 송 광호 설 훈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의 진 신 장 용 신 학용 심 윤 조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윤 근 오 제 세 유기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승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유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낙연 이 만 우 이 상 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윤 석 이이재 이 원 욱 이인영 이인제 李宰榮 이 재 오 이종걸 이 주 영 이 종 진 이종훈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헌 승 이현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순 옥 전 정 희 정 문 헌 전 해 철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현 영 희 홍 의 락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기권 의원(1인)

김 태 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25인)

강 길 부 강석호 강 은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림 김 명 연 김 상 훈 김성 곤 김성 찬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종 태 김 종 훈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현 숙 김 한 표 김 혅 김희정 남 경 필 노 웅 래 노 철 래 류성 걸 류지 영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민병주 민 혀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상 은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주 선 박 창 식 박 인 숙

박 홍 근 서 기 호 서병수 서 영 교 신 경 림 손 인 춘 신 계 륜 신 동 우 신 의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규 백 안 종 범 안 철 수 아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 대 운 유성엽 유 승 우 유일호 윤 명 희 윤 상 현 유 재 옥 윤 호 중 이 군 현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욱 이이재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찬 열 이 한 성 이 허 승 이 혀 재 임 수 경 장 유 석 정 문 헌 정성호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청 래 정 회 수 조명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정 식 진 성 준 진 영 최경환 최 봉 홍 최 원 식 한 선 교 현영희 황 영 철 황 우 여 함 진 규 황 인 자

반대 의원(29인)

강 기 정 강 동 원 김 경 협 김 광 진 김 기 식 김기준 김 미 희 김 재 연 박 범 계 김 현 미 박 혜 자 설 훈 양 승 조 오 병 윤 유 은 혜 은 수 미 이 인 영 이 재 오 이 해 찬 장 병 완 전 해 철 정진후 진 선 미 최규성 추 미 애 최 민 희 한 명 숙 홍 의 락 홍 익 표

기권 의원(33인)

김 동 철 김 민 기 김성주 김 제 남 남 인 순 김 태 년 도 종 환 문 희 상 박 원 석 배기운 부 좌 현 송 광 호 신 경 민 신 기 남 신 장 용 심 재 권 우 원 식 오 영 식 유 승 민 유 승 희 유인 태 유 관 석 이 상 민 이상직 임 내 현 이 윤 석 전 순 옥 전 정 희 정세 균 정 호 준 주 승용 최 동 익 홍 영 표

○출석 의원(288인)

강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석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현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 상 민 김 미 희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 곤 김성주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재 김 정 록 정 원 김 윤 김 훈 김 제 남 김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현 김 현 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웅 래 남 인 순 노 영 민 류지 영 노 철 래 도 종 환 류성걸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병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민병주 민 현 주 민홍철 박 대 동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 범 계 박성호 박성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주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창 식 박 홍 근 박지 원 박 혜 자 배기운 백 군 기 백 재 현 배 재 정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청 원 서 상 기 서 영 교 서용교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호 설 송 영 근 송호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상 정 신 장 용 신 학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원 혜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영 유기준 유기홍 유성엽 유 대 운 유 승 민 유승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윤 진 식 은 수 미 이 군 현 이 낙 연 이노근 이 만 우 이명수 이목회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완 영

이운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이재 이인제 이장우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걸 이종진 이종훈 이 주 영 이진복 이 채 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현 재 인 재 근 이 임 내 현 임 수 경 병 장 윤 석 장 완 전 병 헌 장 하 나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몽 준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세 균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수 성 정 의 화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회 수 조 경 태 조 해 진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주 승용 주 영 순 주 호 영 조 현 룡 진 성 준 진 선 미 진 영 최경환 최 동 익 최규성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현 영 회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우 여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진 하

○개의 시 재석 의원(206인)

강 길 부 강 석 훈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길 정 우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광 림 김 도 읍 김기식 김기현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동 철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승 남 영 록 김 영 우 김성 태 김 김용 태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한 길 김 한 표 김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혂 김 희 정 김희국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지 영 류 성 걸 문 대 성 문 병호 문 재 인 문 정 림 민병두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민홍철 박 덕 흠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박 민 수 박 민 식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성효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백 군 기 백 재 현 박 창 식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성완종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안 효 대 염 동 열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기홍 유 대 운 유기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군 현 윤 재 옥 이 낙연 윤 호 중 이 만 우 이 미 경 이 상 일 이 상 직 이에리사 이 와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운 룡 이 이 재 이인영 이 재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진 이종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채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수 경 임 내 현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갑윤 정 문 헌 정 병 국 정성호 정 수 성 정진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희수 조 워 진 조 경 태 조 명 철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옂 최경화 최 민 희 최봉홍 최 원 식 최 재 성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의 락 홍 익 표 홍지만 황 영 철 황인자 황 진 하

○산회 시 재석 의원(28인)

강석호 김 민 기 김 재 연 김 재 윤 김 현 김 제 남 김 한 표 남 인 순 박 인 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창 식 박 혜 자 서 기 호 아 효 대 염 동 열 이 노 근 이에리사 이 철 우 이 종 진 이 헌 승 정진후 임 수 경 정성호 진 선 미 최 민 희 함 진 규 홍 익 표

○청가 의원(5인)

김기선 김용익 김춘진 한기호 홍일표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석 정 진 차 장 임 병 입 법 규 의 사 국 상 수 장 전

○출석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 기 최 교 육 부 장 서 수 관 남 외 교 부 장 곾 윤 병 세 법 무 부 장 관 황 亚 아 안 전 행 정 부 장 관 복 유 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 \circ 필 보건복지부장관 문 형 표 환 경 부 장 관 유 성 규 국토교통부장관 서 승 환 해양수산부장관 윤 진 숙

○출석 정부위원

외교부제 2 차 관 조 태 열 국 방 부 차 관 백 승 주 금 융 위 원 장 신 제 유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황인자	비례대표	자유선진당	2013. 12. 17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김영주	비례대표	새누리당	2013. 12. 12

○의석 승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황인자	비례대표	자유선진당	2013. 12. 16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개혁 특별	주호영	새누리당	2013. 12. 12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안전행정	황인자	새누리당	2013. 12. 19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주호영 김학용 장윤석 홍문종 김희정 박대동 성완종 이노근 이우현	새누리당	
정치개혁 특별	백재현 박기춘 김영주 김성주 도종환 윤후덕 한정애 황주홍	민주당	2013. 12. 12
	심상정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자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개혁 특별	김학용	새누리당	2013.
78/1/11학 학결	백재현	민주당	12. 12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지는	부좌현	국회운영	2013.
4위군경	394	무약면	4위군경	12. 13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김영주	새누리당	퇴직	2013. 12. 12

○의안 제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박민수·이낙연·변재일·김춘진· 김진표 · 김영록 · 김광진 · 정청래 · 배기운 · 강창일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유재중·류지영·이진복·문정림· 김세연 · 신의진 · 김도읍 · 신경림 · 김명연 · 김정록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강창일・배기운・박수현・윤호중・ 정호준 · 유성엽 · 박남춘 · 김재윤 · 신장용 · 심재권·김광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 12. 10 오제세·박수현·이인제·김태호· 이윤석 · 배기운 · 정세균 · 양승조 · 변재일 ·

1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홍문표 · 유성엽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박민수·이낙연·변재일·김춘진· 김진표 · 김영록 · 김광진 · 정청래 · 배기운 · 이상직 · 강창일 의원 발의)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촉구 결의안

(2013. 12. 10 한명숙·최동익·진성준·윤관석· 김재윤・우원식・이용섭・배기운・양승조・ 조정식 · 정세균 · 홍영표 · 백재현 · 박남춘 · 배재정 · 윤후덕 · 정진후 · 임수경 · 이원욱 · 장하나 · 김광진 · 정호준 · 박원석 · 은수미 · 한정애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

(2013. 12. 10 이종훈·윤명희·김기선·서용교· 나성린 · 주영순 · 박대동 · 남경필 · 민현주 · 전하진 · 김성태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이종훈·윤명희·김기선·서용교· 나성린 · 주영순 · 박대동 · 남경필 · 민현주 · 김성태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종훈·윤명희·김기선·서용교· 나성린 · 주영순 · 박대동 · 남경필 · 민현주 · 전하진 · 김성태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강창일·윤관석·배기운·김성곤· 이학영・주승용・전순옥・민홍철・이상직・ 이상민 · 유성엽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박성호·이만우·정문헌·박대동· 강기윤 · 김태원 · 심학봉 · 유승우 · 최봉홍 · 홍지만 의원 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 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 이노근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박민수·변재일·최원식·정청래· 이낙연 · 박남춘 · 김광진 · 김춘진 · 김재윤 · 이상직 · 강창일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박민수·변재일·정청래·이낙연· 박남춘 · 김광진 · 김춘진 · 김재윤 · 최원식 · 이상직 · 강창일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김춘진·신계륜·김우남·최규성· 박민수·유기홍·황주홍·윤관석·배기운· 김윤덕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황주홍·이윤석·이상민·김우남·이재영· 강기윤 의원 발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정희수·김성찬·송영근·윤명희· 심학봉·정갑윤·김한표·김종태·주영순· 김대환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김광진·최민희·김기식·박홍근· 박완주·강동원·배기운·백재현·이학영· 진성준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심재철·심윤조·박인숙·이주영· 김영우·박상은·안효대·김태흠·이노근· 김태원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김춘진・김우남・최규성・박민수・ 문희상・유기홍・황주홍・윤관석・박지원・ 김윤덕 의원 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정희수·김성찬·송영근·윤명희· 심학봉·정갑윤·김한표·김종태·김상훈· 김태환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강창일·배기운·윤후덕·부좌현· 박홍근·신학용·박남춘·신경민·조정식· 주승용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주승용·강창일·최규성·배기운·이윤석·김성곤·노영민·임내현·박주선·변재일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정희수·김성찬·송영근·윤명희· 심학봉·정갑윤·김한표·김종태·김상훈· 김태환 의원 발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정희수·김성찬·송영근·윤명희· 심학봉·정갑윤·김한표·김종태·김상훈· 김대화 의원 발의)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정희수·김성찬·송영근·윤명희· 심학봉·정갑윤·김한표·김종태·김상훈· 김태환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주승용·강창일·최규성·배기운· 이윤석·김성곤·노영민·임내현·박주선· 변재일 의원 발의)

이상 9건 12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노웅래·정청래·이춘석·문병호· 전순옥·장하나·이원욱·심재권·남인순· 원혜영 의원 발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황주홍·이윤석·이상민·김우남·이재영· 강기유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강창일·배기운·윤후덕·부좌현· 박홍근·신학용·박남춘·신경민·조정식· 주승용 의원 발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 황주홍·이윤석·이상민·김우남·이재영· 강기윤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 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 이노근 의원 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 황주홍·이윤석·이상민·김우남·이재영·

강기윤 의원 발의)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 정희수 · 문정림 · 강석호 · 조명철 · 이완구 · 이노근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1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김춘진·배재정·김윤덕·최재성· 양승조 · 김우남 · 강기정 · 홍문표 · 김영록 · 배기운 의원 발의)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 황주홍 · 이윤석 · 이상민 · 김우남 · 이재영 · 강기윤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 황주홍 · 이윤석 · 이상민 · 김우남 · 이재영 · 강기윤 의원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워 대표발의)

(2013. 12. 10 김춘진·박민수·윤관석·김우남· 김영록 · 이윤석 · 이낙연 · 김성곤 · 김승남 · 박지원 의원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정희수·김성찬·송영근·윤명희· 심학봉 · 정갑윤 · 김한표 · 김종태 · 윤진식 · 김태환 의원 발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정희수·김성찬·송영근·윤명희· 심학봉 · 정갑윤 · 김한표 · 김종태 · 주영순 · 김태환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 황주홍 · 이윤석 · 이상민 · 김우남 · 이재영 · 강기윤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 황주홍 · 이윤석 · 이상민 · 김우남 · 이재영 · 강기윤 의원 발의)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 황주홍 · 이윤석 · 이상민 · 김우남 · 이재영 · 강기윤 의원 발의)

이상 9건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서상기·강은희·박성호·주호영· 박인숙 · 김장실 · 조원진 · 이학재 · 민병주 · 염동열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박성호·김장실·이만우·조원진· 강기윤 · 김태원 · 심학봉 · 김성찬 · 박창식 · 유승우·최봉홍·홍지만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박성호·조원진·강기윤·김태원· 심학봉・박창식・유승우・최봉홍・홍지만・ 이에리사 의원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박성호·이만우·강기윤·김태원· 심학봉 · 김성찬 · 박창식 · 유승우 · 최봉홍 · 홍지만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2013. 12. 10 박인숙·김태원·송영근·안홍준· 김장실 · 서상기 · 윤명희 · 이현재 · 홍지만 · 김명연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강창일·배기운·부좌현·전순옥· 임수경 · 박홍근 · 주승용 · 박민수 · 이학영 · 김재윤 의원 발의)

12월 1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박성호·이만우·정문헌·박대동· 강기윤 · 김태원 · 심학봉 · 김성찬 · 박창식 · 유승우·최봉홍·홍지만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강창일·윤관석·배기운·김성곤· 이학영·주승용·전순옥·민홍철·이상직· 이상민·유성엽 의원 발의)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 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 이노근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김광진·전순옥·남인순·김성곤· 이학영·배기운·박홍근·백재현·진성준· 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0 김광진·배기운·전순옥·이춘석· 이학영·이원욱·박홍근·백재현·진성준· 진선미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 황주홍·이윤석·이상민·김우남·이재영· 강기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강창일·노웅래·이상직·배기운· 김재윤·주승용·이학영·이미경·노영민· 최규성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정희수·김성찬·송영근·윤명희· 심학봉·손인춘·정갑윤·김한표·김종태· 김태환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황주홍·이윤석·이상민·김우남·이재영· 강기윤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김태호·홍지만·김성찬·권성동·

이채익·김재경·남경필·정갑윤·신성범· 김동완·김한표·이주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강창일·노웅래·이상직·배기운· 김재윤·주승용·이학영·이미경·신학용· 노영민·최규성 의원 발의)

12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정희수·김성찬·송영근·윤명희· 심학봉·손인춘·정갑윤·김한표·김종태· 김대환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김광진·배기운·전순옥·이춘석· 이학영·이원욱·박홍근·백재현·진성준· 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 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 이노근 의원 발의)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황주홍·이윤석·이상민·김우남·이재영· 강기윤 의원 발의)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강창일·배기운·안규백·김성곤· 이상민·신경민·주승용·윤호중·이학영· 최규성 의원 발의)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2013. 12. 10 김광진·배기운·박홍근·김성곤·홍의락·김현미·백재현·이학영·진성준·

12월 1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장하나) 징계안

이춘석 의원 발의)

(2013. 12. 10 김도읍·강기윤·강길부·강석호· 강석훈·강은희·경대수·권성동·권은희· 길정우·김광림·김기선·김기현·김동완·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김세연・김영우・金永柱・김용태・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숙 · 김회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성린 · 남경필·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정림·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성효 · 박인숙 · 박창식 · 서병수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성완종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심학봉 · 안덕수 · 안종범 · 안홍준 · 안효대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승우 · 유일호 · 유재중 · 유정복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진식 · 이강후・이군현・이노근・이만우・이명수・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이재영・李宰榮・이재오・이종진・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헌승 · 이현재 · 장윤석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수성 · 정우택 · 정의화 · 정희수・조명철・조원진・조해진・조현룡・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황영철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요구)

국회의원(양승조) 징계안

(2013. 12. 10 김도읍・강기윤・강길부・강석호・ 강석훈 · 강은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김광림·김기선·김기현·김동완·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김세연・김영우・金永柱・김용태・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숙 · 김회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성린 · 남경필·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정림·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성효 ·

박인숙 · 박창식 · 서병수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성완종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심학봉 · 안덕수 · 안종범 · 안홍준 · 안효대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승우 · 유일호 · 유재중 · 유정복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진식 · 이강후・이군현・이노근・이만우・이명수・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이재영・李宰榮・이재오・이종진・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헌승 · 이현재 · 장윤석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수성 · 정우택 · 정의화 · 정희수・조명철・조원진・조해진・조현룡・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홍일표・홍지만・황영철・황우여・ 황진하 의원 요구)

이상 2건 12월 11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1 홍영표·이미경·우원식·백재현· 장하나 · 김경협 · 은수미 · 박남춘 · 한명숙 · 최봉홍 의원 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1 홍영표·문병호·김영주·윤관석· 박남춘 · 은수미 · 한명숙 · 우원식 · 강창일 · 심상정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1 최봉홍·박창식·김을동·주영순· 김정록 · 박성호 · 이상일 · 정문헌 · 홍영표 · 문대성 · 김한표 · 윤명희 · 정수성 · 강석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1 이강후·정문헌·이한성·김태원· 강은희 · 신성범 · 주영순 · 조원진 · 박인숙 · 정병국 의원 발의)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1 이강후·정문헌·신동우·이한성· 심재철 · 김태원 · 강은희 · 신성범 · 주영순 · 조원진·박인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1 김우남·이낙연·김영록·강동원· 조정식 · 김동철 · 심재철 · 최규성 · 윤명희 · 김춘진 · 변재일 · 김종태 · 박민수 의원 발의) 12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1 김우남·이낙연·김영록·강동원· 김동철 · 최규성 · 윤명희 · 김춘진 · 변재일 · 박민수 의원 발의)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1 신경민·심재권·윤관석·최민희· 강창일 · 윤호중 · 추미애 · 인재근 · 김승남 · 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1 이재오 · 유인태 · 김용태 · 이낙연 · 이만우 · 이주영 · 심재권 · 전순옥 · 박민수 · 신성범 의원 발의)

12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1 김기식·박원석·박수현·박홍근· 김광진 · 우원식 · 진성준 · 윤후덕 · 정호준 · 이인영 · 남인순 의원 발의)

12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1 김제남·심상정·강동원·박원석· 정진후 · 서기호 · 조경태 · 우윤근 · 전순옥 · 이낙연 • 부좌현 의원 발의)

12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1 안종범·박대동·이완영·김종태· 이우현 · 이재영 · 조현룡 · 김한표 · 이현재 · 강석훈 · 박대출 · 김현숙 · 심학봉 · 신의진 의원 발의)

12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1 주승용·강창일·최규성·배기운· 이윤석 · 김성곤 · 노영민 · 임내현 · 박주선 · 변재일 의원 발의)

12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2 심재철·조명철·조원진·강기윤· 박상은 · 안효대 · 김태흠 · 이노근 · 김태원 · 이종진·송영근·황진하·함진규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2 이만우·홍지만·김동완·전하진· 안홍준 · 문정림 · 민현주 · 염동열 · 김태원 · 정우택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2 이만우·정성호·심재철·류지영· 홍문종 · 이완영 · 문대성 · 윤명희 · 이재오 · 김태워 의워 발의)

이상 3건 1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2 최봉홍·박창식·김을동·주영순· 김정록・박성호・이상일・정문헌・홍영표・ 문대성・김한표・윤명희・정수성・강석훈 의원

12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장하나) 징계안

(2013. 12. 12 김도읍·강기윤·강길부·강석호· 강석훈・강은희・경대수・권성동・권은희・ 길정우·김광림·김기선·김기현·김동완·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숙 · 김회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성린 · 남경필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정림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성효 · 박인숙 · 박창식 · 서병수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성완종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심학봉 · 안덕수 · 안종범 · 안홍준 · 안효대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승우 · 유일호 · 유재중 · 유정복 · 윤명희 · 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진식・이강후・ 이군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李宰榮・이재오・이종진・이종훈・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헌승 · 이현재 · 장윤석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수성 · 정우택 · 정의화 · 정희수 · 조명철・조원진・조해진・조현룡・주영순・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 홍일표 · 홍지만 · 황영철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요구)

12월 13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2 이노근·현영희·이현재·신성범· 정희수 · 김우남 · 안효대 · 이명수 · 이이재 · 심재철·김태원 의원 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2 신학용ㆍ이인영ㆍ우윤근ㆍ김상희ㆍ 이춘석 · 권성동 · 김춘진 · 김학용 · 문병호 · 강기정 · 강은희 · 윤관석 · 윤상현 · 홍영표 · 최원식 · 박상은 · 김태원 · 이노근 · 이윤석 · 박남춘 · 강석호 · 이학재 · 안덕수 · 홍일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2 박민수·김춘진·정청래·배기운· 이재오 · 강창일 · 배재정 · 김우남 · 변재일 · 조경태 의원 발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2 정문헌·김태호·이강후·이노근· 이이재 · 서상기 · 김진태 · 윤명희 · 김영우 · 김기선·권성동·김회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워회에 회부

점자기본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2 최동익·윤호중·김용익·유기홍· 강기정 · 이낙연 · 안규백 · 배기운 · 인재근 · 김춘진 · 정진후 · 최민희 · 최원식 · 김재윤 · 부좌현 · 장하나 · 강창일 · 김성곤 · 한명숙 · 윤관석·김윤덕·김태년·우원식·이상직· 도종환 • 백재현 의원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2 박민수·변재일·김춘진·정청래· 이낙연 · 배기운 · 서영교 · 김우남 · 박남춘 · 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통일법제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2 임수경·윤관석·정진후·배재정· 심재권 · 박원석 · 김재윤 · 전순옥 · 김성곤 · 최원식 · 정성호 · 도종환 · 김승남 · 박남춘 · 김현 의원 발의)

2014년 1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2. 13 정부 제출)

12월 1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2. 13 정부 제출)

12월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3 도종환·배기운·김재윤·윤후덕· 유기홍ㆍ김윤덕ㆍ정진후ㆍ배재정ㆍ신계륜ㆍ 박남춘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

(2013. 12. 13 박창식·최봉홍·박성호·남경필· 김을동 · 권성동 · 김장실 · 염동열 · 강석훈 · 이우현ㆍ이상일ㆍ김상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3 조경태·정의화·이찬열·최원식· 김동철 · 박주선 · 심상정 · 전순옥 · 민병두 · 문희상 • 원혜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3 임내현·강기정·김성곤·도종환· 박홍근 · 변재일 · 신장용 · 오영식 · 우윤근 · 유승희 · 원혜영 · 이낙연 · 이미경 · 이윤석 · 이원욱 · 장병완 · 정청래 · 주승용 · 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3 임내현·박홍근·이윤석·변재일· 장병완·이찬열·신장용·우윤근·원혜영· 이원욱 의원 발의)

1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3 임내현·윤후덕·강기정·김성곤· 정청래·주승용·박홍근·이윤석·변재일· 장병완 의원 발의)

12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6 李宰榮·정의화·안홍준·이만우· 서용교·조원진·박인숙·신경림·류지영· 김을동 의원 발의)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6 진성준·김광진·안규백·김재윤· 윤관석·백재현·김관영·임내현·홍의락· 김윤덕·강기정 의원 발의)

12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6 배재정·이원욱·이학영·한정애· 박민수·김윤덕·김춘진·배기운·전순옥· 문희상·김광진·은수미 의원 발의)

12월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회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6 최민희·임수경·박민수·윤관석· 최원식·윤후덕·배기운·이학영·전해철· 장하나·민홍철·유성엽·이상민 의원 발의)

12월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6 한선교·안홍준·심재철·박인숙· 김장실·민병주·김태원·김을동·남경필·

12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이우현 · 홍지만 · 박대출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6 박민수·김영록·김경협·백재현· 김춘진·신기남·김승남·이춘석·이낙연· 김윤덕·강기정 의원 발의) 12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7 이학영·김용익·배기운·우원식· 박원석·배재정·김광진·홍종학·은수미· 이미경·남인순 의원 발의)

12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7 강동원·배기운·김우남·김춘진· 장하나·유성엽·김제남·윤후덕·이미경· 이윤석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7 유기홍·김현·이낙연·심재권· 김용익 · 은수미 · 윤관석 · 정진후 · 이이영 · 김태년 · 한명숙 · 원혜영 · 유인태 · 김성곤 · 조정식 · 문병호 · 최민희 · 진선미 · 김관영 · 이상민 · 한정애 · 정성호 · 인재근 · 유승희 · 유성엽 · 김영환 · 배기운 · 이종걸 · 김영록 · 설훈 · 박남춘 · 김재윤 · 부좌현 · 김민기 · 박혜자 · 김윤덕 · 이원욱 · 배재정 · 김춘진 · 이찬열 · 정의화 · 김기준 · 오영식 · 임내현 · 이미경 · 최규성 · 김광진 · 박수혂 · 전순옥 · 안민석 · 임수경 · 박영선 · 양승조 · 백재현 · 김동철 · 최원식 · 윤후덕 · 전해철 · 진성준 · 조경태 · 유은혜 · 주승용 · 장창일 · 홍영표 · 김승남 · 박민수 · 우상호 · 윤호중 · 이석현 · 신계륜 · 홍의락 · 박홍근 · 남인순 · 최재성 · 황주홍 · 이학영 · 도종환 · 이재오 · 송호창 · 김현미 · 신경민 · 정세균 · 강기정 · 김재연 · 김미희 · 오병윤 · 김제남 · 박원석 · 김선동 · 강동원 · 김한길 · 유대운 · 오제세 · 신학용 · 신기남 · 홍종학 · 박범계 · 노웅래 · 심상정 · 문희상 · 문재인 · 이해찬 · 박지원 · 서영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7 배재정·이원욱·정청래·이학영· 한정애·박민수·안민석·김윤덕·김춘진· 배기운·전순옥·문희상·김광진·은수미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7 강동원 · 이낙연 · 배기운 · 김우남 · 김춘진 · 장하나 · 홍영표 · 김제남 · 윤후덕 · 이미경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7 박주선·안민석·김승남·정성호· 안규백 · 정진후 · 장하나 · 김제남 · 임수경 · 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2. 17 정부 제출)

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7 우상호·이낙연·김영환·정진후· 배기운・장하나・이학영・박홍근・이원욱・ 김성곤 · 원혜영 · 박민수 · 전순옥 · 김기준 · 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회에 회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7 강동원·이낙연·배기운·김우남· 김춘진 · 장하나 · 유성엽 · 김제남 · 윤후덕 · 이미경 · 김광진 의원 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7 강동원·배기운·김우남·김춘진· 장하나 · 유성엽 · 김제남 · 윤후덕 · 이미경 · 이윤석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7 최동익·인재근·이낙연·배기운· 박남춘 · 전순옥 · 김성곤 · 정청래 · 한명숙 · 우윤근·안홍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7 심재철·이만우·조명철·이종진· 송영근 · 황진하 · 함진규 · 염동열 · 이군현 · 이에리사 · 박성호 · 김세연 의원 발의)

1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워 대표발의)

(2013. 12. 17 박주선·원혜영·전병헌·김승남· 정성호 · 안규백 · 정진후 · 장하나 · 김제남 · 박홍근 의원 발의)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7 박주선·원혜영·전병헌·안민석· 김승남 · 정성호 · 안규백 · 정진후 · 장하나 · 인재근 · 김제남 · 박홍근 의원 발의)

12월 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7 박주선·안민석·김승남·정성호· 안규백 · 정진후 · 장하나 · 김제남 · 임수경 · 박홍근 의원 발의)

12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2. 17 정부 제출)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7 김광진·김민기·장하나·배기운· 박홍근 • 백재현 • 이학영 • 진성준 • 안규백 • 이완영 의원 발의)

12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2013. 12. 17 김제남·심상정·정진후·서기호· 박원석 · 강동원 · 우윤근 · 유승희 · 박주선 · 이학영 · 전순옥 · 김영록 · 우원식 · 조경태 · 박홍근 · 남인순 · 장하나 · 오영식 · 김상희 · 김현미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7 심재철·박수현·이한성·김광진· 백군기 · 박인숙 · 민홍철 · 김상민 · 이종진 · 송영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윤상현·강은희·권은희·김회선· 문정림・서용교・손인춘・이노근・이우현・ 이헌승 · 전하진 의원 발의)

12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윤상현·강은희·권은희·김회선· 문정림 · 서용교 · 손인춘 · 이노근 · 이우현 · 이헌승·전하진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이명수·김태원·김을동·이완구·

성완종·이노근·문정림·정의화·염동열· 김한표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김관영·김승남·윤후덕·배재정· 백재현·박수현·박기춘·전정희·안규백· 배기운·진성준·이윤석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8 김관영·김승남·윤후덕·배재정· 백재현·박수현·박기춘·전정희·안규백· 배기운·진성준·이윤석 의원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유기홍·김윤덕·임수경·배기운· 윤후덕·배재정·이상민·윤관석·유은혜·

우원식·정진후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전정희·이원욱·김춘진·이상직· 이춘석·전순옥·최규성·김관영·강동원· 김성주·유성엽·부좌현·김윤덕·박민수 의원 박의)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8 문대성·함진규·길정우·김태원·김한표·황진하·이만우·김정록·원유철·최봉홍·김정훈 의원 발의)

12월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유기홍·김윤덕·임수경·배기운· 윤후덕·배재정·이상민·윤관석·김상희· 유은혜·우원식·정진후 의원 발의)

12월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서영교·배기운·이낙연·김성곤·박민수·황주홍·김재윤·장하나·박남춘· 김광진 의원 발의)

1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서영교・배기운・이낙연・임수경・ 김성곤・황주홍・김재윤・장하나・박남춘・ 김광진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민현주·유기준·유승민·이종훈· 김정록·권은희·박인숙·민병주·김상민· 김재경·박대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8 신기남·강기정·이미경·이종진· 이노근·한명숙·원혜영·김관영·이윤석· 이용섭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김관영·김승남·배재정·백재현・박수현・박기춘·전정희·안규백·배기운・진성준・이윤석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김관영·김승남·윤후덕·배재정· 박기춘·전정희·안규백·배기운·진성준· 이윤석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김관영·유승희·정성호·최민희· 안규백·박수현·전정희·배기운·진성준· 한정애·이윤석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변재일·이윤석·이종걸·윤후덕· 김춘진·김경협·임내현·박수현·박기춘· 이미경·김관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8 박상은·문정림·염동열·이강후· 송광호·이재영·남경필·이이재·김기선· 이만우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이명수·이노근·김태원·박상은· 안효대·이이재·김을동·이완구·성완종· 문정림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김관영·김승남·윤후덕·배재정· 박기춘·전정희·배기운·진성준·이윤석· 김광진 의원 발의)

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 12. 18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이명수·이노근·김태원·박상은· 심재철 · 안효대 · 이이재 · 김을동 · 이완구 · 성완종·문정림 의원 발의)

12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8 김종태·신의진·이완영·조현룡· 김한표 · 김기현 · 이현재 · 박대출 · 박성효 · 이만우 · 이한구 · 서병수 · 김성찬 · 손인춘 · 송광호 · 이주영 · 서청원 · 유기준 · 정희수 · 송영근 · 김도읍 · 김무성 · 이한성 · 박덕흠 · 윤명희·홍문표·이운룡·김영록·김춘진 의원 발의)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김태호·이채익·이만우·김광림· 이주영 · 정문헌 · 김성찬 · 정의화 · 신성범 · 여상규ㆍ남경필ㆍ홍지만ㆍ김재경ㆍ정갑윤ㆍ 이한성 의원 발의)

12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김세연·이주영·민현주·박인숙· 송영근 · 정갑윤 · 서용교 · 민병주 · 이운룡 · 이이재 의원 발의)

12월 1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제32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 12. 19 의장 제의)

휴회의 건

(2013. 12 19 의장 제의)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5일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2013. 12. 18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제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3. 12. 19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농어기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3. 12. 19 정무위원장 제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3. 12. 1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한-독 수교 130주년·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대안)

(2013. 12. 19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12. 19 국방위원장 제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13. 12. 19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12. 19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12. 19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13.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 발의)

(2013. 6. 13 홍일표・유기준・문정림・정희수・ 김광진 · 이주영 · 남경필 · 정갑윤 · 이강후 · 이진복 · 이현재 · 박대동 · 김재경 · 심학봉 · 신의진 · 안효대 · 유승우 · 장윤석 · 정수성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윤 의원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윤 의원 발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윤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윤 의원 발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윤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윤 의원 발의)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윤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윤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윤 의원 발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윤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김관영·배기운·김춘진·이윤석· 안규백·유성엽·송호창·전병헌·부좌현· 민홍철 의원 발의)

(이상 12건 원안대로 의결)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3. 1. 24 김학용·유승우·이우현·홍문표· 유기준·박대동·윤명희·이완영·이종훈· 이한성·이노근·권성동 의원 발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5. 28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3 정갑윤·강길부·이채익·박대동· 김기현·안효대·문대성·강기윤·윤영석· 김대환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3. 8. 1 정부 제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5. 22 정부 제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유 의원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5. 28 정부 제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윤 의원 발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5. 28 정부 제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 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 강기유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2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 발의)

(2012. 8. 10 박대동·김태흠·정희수·한기호· 김을동 · 유일호 · 이만우 · 홍문표 · 김상훈 · 김현숙 의원 발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2012. 8. 10 박대동·김태흠·정희수·한기호· 김을동 · 유일호 · 이만우 · 홍문표 · 김상훈 · 김현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7. 18 김우남 · 신장용 · 김동철 · 이상민 · 유대운 · 오제세 · 조현룡 · 홍종학 · 유성엽 · 김영록·최규성·김재윤 의원 발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회선 의원 대표발의)

(2013. 1. 15 김회선·김을동·김종훈·민병주· 유기준・이만우・이장우・전하진・정문헌・ 정희수 · 주영순 의원 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 10 정호준·배기운·이종걸·김영주· 안규백 · 김영환 · 김용익 · 조정식 · 강기정 · 양승조 · 배재정 · 오영식 · 진선미 · 한명숙 · 이언주 · 이용섭 의원 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김관영·배기운·신기남·김춘진· 한정애·박수현·박남춘·김장실·이강후· 이노근・노철래・이언주・윤호중・김종훈・ 신학용 · 김동철 · 임수경 · 심윤조 · 유일호 · 최규성・박상은・유승우・우상호・강길부 의원 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2013. 3. 14 김종훈·김영환·이만우·김태원· 정희수 · 정문헌 · 김한표 · 김형태 · 김종태 · 이이재 의원 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 의원 대표발의)

(2013. 4. 17 송광호·이만우·이한성·부좌현· 김태원 · 박성효 · 이주영 · 안홍준 · 이학재 · 주영순 의원 발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2013. 2. 5 정부 제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3. 5. 28 전해철·최원식·부좌현·정호준· 박범계 · 박남춘 · 윤관석 · 이해찬 · 홍종학 · 송호창·최민희·백재현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1 김기선·김도읍·손인춘·이장우· 신의진·김명연·이철우·이현재·김기현· 김을동·홍지만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3. 1. 24 안민석·김우남·배기운·김현미· 이상민・김성곤・양승조・전병헌・김재윤・ 전정희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3. 1. 31 이종걸·추미애·김영록·배기운· 안민석·황주홍·이상직·김영주·정호준· 김영환 · 노회찬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박대동・정희수・홍문표・하태경・ 김상훈 · 성완종 · 김을동 · 이재영 · 최봉홍 · 주영순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강기정·최재성·배기운·임수경· 서영교 · 김태년 · 신장용 · 조정식 · 박홍근 · 김동철 · 한명숙 · 윤관석 · 백재현 · 양승조 · 김광진·김우남·홍종학·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정무위원장 보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2013. 2. 14 전순옥·유성엽·윤관석·인재근· 홍종학 · 배기운 · 우원식 · 이인영 · 정성호 · 김제남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보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2012. 7. 27 민병주·손인춘·이만우·김정록· 김현숙 · 서상기 · 김장실 · 현영희 · 정두언 · 김세연 • 박성호 의원 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2. 18 박인숙·윤상현·이명수·정희수· 정몽준·박성호·윤명희·민병주·강은희· 신의진 의원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2. 18 박인숙·윤상현·이명수·정희수· 정몽준·박성호·윤명희·민병주·강은희· 신의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6. 12 정부 제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2. 18 박인숙·윤상현·이명수·정희수· 유기준·정성호·박성호·윤명희·민병주· 강은희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6. 12 정부 제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2. 18 박인숙·윤상현·이명수·정희수· 유기준·정성호·정몽준·박성호·윤명희· 민병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에 대한 중단 촉구 결의안

(2013. 10. 14 홍익표·심재권·김성곤·인재근·김한길·정청래·박주선·우상호·원혜영·유인태·박병석 의원 발의)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경고 결의안

(2013. 11. 1 김영우·원유철·심윤조·정문헌· 황진하·이자스민·조명철·안홍준·정의화· 문대성 의원 발의)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2013. 11. 14 이자스민·손인춘·심상정·문정림· 김기현·김영우·길정우·박대동·신의진· 김정훈·서상기·박병석·강창희·심윤조· 김을동·김재원·류성결·유기준·현영희· 경대수·신성범·송광호·박원석·전하진· 김태환·유승민·최규성·장윤석·박완주· 원혜영·이만우·김태원·김재윤·박인숙· 이석현 · 박주선 · 정문헌 · 김정록 · 민병주 · 권성동 · 신동우 · 신경림 · 안종범 · 김제남 · 박성호 · 윤관석 · 김광진 · 백재현 · 유인태 · 박민식 · 이한구 · 심재권 · 김용익 · 김미희 · 권은희 · 이장우 · 송영근 · 이종훈 · 임내현 · 남경필 · 이우현 · 홍문표 · 홍문종 · 김상희 · 김민기 · 최민희 · 남인순 · 우원식 · 이상일 · 전해철・李宰榮・이진복・이재영・이군현・ 김상민 · 황우여 · 윤명희 · 안효대 · 김세연 · 박대출 · 김명연 · 박덕흠 · 황영철 · 이노근 · 한정애 · 신계륜 · 신장용 · 정병국 · 이학재 · 김장실 · 이에리사 · 박창식 · 조원진 · 최원식 · 정의화 · 김한표 · 강은희 · 박기춘 · 이운룡 · 민현주 · 심재철 · 윤재옥 · 윤진식 · 김무성 · 하태경 · 주호영 · 박수현 · 이인영 · 조해진 · 강석호・강석훈・주영순・김현숙・함진규・ 김기식・박성효・김재연・이명수・金永柱・ 김동완 · 김희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한-독 수교 13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2013. 10. 30 남경필·이철우·진성준·백군기·신장용·원혜영·이만우·김성곤·조해진·정문헌·송광호·이상일·이석현·박민식·홍의락·민현주·김미희·유승희·강석호·최봉홍·유기준·유일호·정희수·김춘진·이언주·경대수·김장실·유승우·김상훈·심학봉·김무성·이주영·노웅래·김재경·박인숙·신기남·심상정·강은희·박대동·이이재·이종훈·김기현·우윤근·김한표·신의진·유성엽·문정림·노영민·임내현·김동철·홍일표·진영·장윤석·한선교 의원발의)

한-독 수교 130주년 ·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2013. 11. 15 김성곤·심재권·안민석·김춘진· 주승용·이낙연·우윤근·김영록·한명숙· 홍의락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민홍철·최민희·이윤석·김우남· 박병석·박인숙·김동철·장하나·김광진· 홍익표·주승용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 발의)

(2012. 7. 13 백군기·민홍철·김성찬·최동익· 한명숙·최민희·유인태·안규백·김성주· 황진하 의원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

(2013. 1. 8 손인춘·서병수·이상일·이인제· 박창식·송영근·김성찬·유승민·김형태· 김종태·유정복·유기준·한기호·신의진· 김태흠·李宰榮·이자스민·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국방위원장 보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23 정부 제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3. 3. 14 박남춘·김재윤·배기운·김성곤· 진성준·원혜영·최민희·윤후덕·전병현· 백재현 의원 발의)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3. 9. 2 정부 제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효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5 박성효·박덕흠·金永柱·주영순· 강기윤·황영철·최봉홍·서용교·이종훈· 송광호·신동우·윤영석·이운룡·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 김도읍·이재영·권성동·서용교·신의진·남경필·이진복·이헌승·김상훈·김정훈·하태경 의원 발의)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9 오제세·배기운·유대운·김민기· 이낙연·김미희·강동원·문병호·유성엽· 김성곤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9 김민기·김승남·이인영·윤후덕·

이찬열·백재현·박기춘·이원욱·김관영· 김경협 의원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9. 2 정부 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0. 7 정부 제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0. 21 정부 제출)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3. 5. 31 이찬열·서영교·윤후덕·김우남· 김민기·김성곤·문병호·최원식·신장용· 전순옥·심재권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3. 9. 16 부좌현·윤후덕·윤관석·한명숙· 박기춘·배기운·전순옥·오영식·이원욱· 변재일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8 이해찬·이상민·박수현·김현· 김태년 · 안규백 · 유인태 · 유대운 · 최민희 · 김상희·강창희·강기정·이낙연·배재정· 박지원 · 박주선 · 조정식 · 원혜영 · 홍익표 · 신기남 · 윤진식 · 김태흠 · 송광호 · 정우택 · 이명수・홍영표・조경태・이윤석・배기운・ 홍종학 · 이용섭 · 추미애 · 임내현 · 성완종 · 김영주・박병석・박창식・강동원・金永柱・ 문정림 · 박남춘 · 박홍근 · 장하나 · 홍문표 · 최재성 · 이찬열 · 윤후덕 · 윤호중 · 남인순 · 이상직 · 이종걸 · 손인춘 · 오영식 · 전정희 · 김성곤 · 김현숙 · 김태원 · 김동철 · 신경민 · 노철래 · 강창일 · 김춘진 · 심재권 · 김기준 · 박성효・김광진・황주홍・신동우・이미경・ 유기홍 · 유승희 · 백군기 · 이춘석 · 양승조 · 한명숙 · 홍의락 · 이학영 · 장병완 · 은수미 · 주승용 · 노회찬 · 윤관석 · 박영선 · 정성호 · 최원식 · 문재인 · 한정애 · 김경협 · 이상규 · 정세균・박기춘・우상호・전해철・전순옥・ 전병헌 · 백재현 · 민병두 · 정호준 · 박민수 · 김용익 · 박범계 · 문희상 · 민홍철 · 박완주 · 진성준 · 임수경 · 이인제 · 박덕흠 · 유은혜 ·

최규성 · 김관영 · 서영교 · 김성주 · 이인영 ·

도종환 · 이장우 · 경대수 · 김동완 · 이원욱 · 정청래 · 문병호 · 김영환 · 김승남 · 김윤덕 · 우윤근 · 최동익 · 노영민 · 노웅래 · 부좌현 · 신장용 · 신학용 · 인재근 · 오제세 · 김한길 · 우원식 · 신계륜 · 김재윤 · 유성엽 · 안민석 · 김민기 · 김기식 · 진선미 · 김우남 · 유기준 · 김영록 · 이석현 · 박혜자 · 김진표 · 이목희 · 설훈 · 최재천 · 김현미 · 이언주 · 변재일 · 김근태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완구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2 이완구·정희수·안종범·황영철· 정몽준·함진규·길정우·이인제·이장우· 민현주·성완종·박덕흠 의원 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김기선·이현재·이이재·이에리사· 김태원·송광호·윤명희·민병주·박민식· 이헌승·황영철·박대출·손인춘 의원 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2. 11. 13 정부 제출)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4 정희수·윤명희·최봉홍·김태원· 이명수·이완영·이에리사·유승우·김상훈· 심학봉 의원 발의)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

(2013. 3. 29 유대운·이찬열·최동익·최원식· 김경협·진성준·박주선·강동원·정세균· 윤후덕·전순옥·전해철·오영식·전병헌· 박민수 의원 발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5. 31 정부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4 박기춘·김민기·이윤석·민홍철·한명숙·이미경·박지원·우원식·김관영· 김성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 발의)

(2013. 7. 17 문희상·김춘진·이찬열·안규백· 박주선·유대운·백재현·정세균·김성곤· 유승우 · 이윤석 · 김진표 · 김관영 · 전병헌 · 이미경 · 강동원 · 박남춘 · 정성호 · 원혜영 · 설훈 · 김영주 · 박기춘 · 김동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3. 8. 13 이찬열·홍종학·배기운·윤후덕· 전순옥·노웅래·김광진·이미경·김동철· 최원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3. 9. 9 박남춘·김재윤·배기운·윤후덕· 윤호중·김광진·전해철·백재현·원혜영· 유성엽·문병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박성효·송광호·이장우·이운룡· 이완구·정우택·강기윤·황영철·원유철· 김기선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노영민·윤후덕·이상민·이원욱·오영식·김영환·우윤근·김성곤·진성준· 인재근·김진표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21 정부 제출)

(이상 1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9건 안전행정위원장 보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5 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이우현·김세연·이운룡·박원석·김을동· 조명철 의원 발의)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3. 25 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 이우현·김세연·이운룡·박원석·김을동· 조명철 의원 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3. 25 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 이우현·김세연·이운룡·박원석·김을동· 조명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9. 28 김춘진·황영철·배재정·최민희· 홍종학·정희수·최재성·김영록·유성엽· 김성곤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9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황영철·김진태·박성호·김성찬· 김도읍 · 정희수 · 강석호 · 김종태 · 이우현 · 유승우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2. 7. 12 김재원·조원진·권성동·최경환· 김정록 · 홍문표 · 강석호 · 윤상현 · 김태환 · 장윤석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2. 7. 23 남인순·김성주·박홍근·한정애·

최동익 · 도종환 · 이춘석 · 문병호 · 이미경 ·

최민희 · 인재근 · 민홍철 · 유은혜 · 이낙연 ·

홍종학 · 김용익 · 전정희 · 이언주 · 양승조 ·

이목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

(2013. 2. 5 노철래·손인춘·권성동·이재영·

염동열 · 이우현 · 김세연 · 홍문표 · 김정록 ·

김태원・민현주・주영순・정수성・이강후・

박인숙 · 이종진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3. 4. 19 주영순·서용교·류지영·이학재· 이만우 · 이한성 · 유승우 · 한선교 · 정희수 · 박대동·김성태·김태원·정우택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12. 9. 27 문희상·김동철·전병헌·박남춘·

정성호 · 안규백 · 김영우 · 유성엽 · 유대운 ·

김민기 · 김성곤 · 배기운 · 이종진 · 김춘진 ·

이찬열 • 민홍철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3. 1. 9 이철우·권은희·한기호·조현룡· 홍지만 · 이재영 · 함진규 · 정희수 · 홍문표 · 문대성·박대동·김근태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 18 정부 제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 의원 대표발의)

(2013. 3. 8 조현룡·박성호·김한표·이윤석· 이헌승 · 이철우 · 주승용 · 이명수 · 김성곤 · 박인숙 의원 발의)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 3. 21 정부 제출)

제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

(2013. 4. 5 이노근·안홍준·김동완·심윤조· 조명철 · 정문헌 · 이현재 · 이한성 · 조원진 · 박민수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3. 4. 8 문병호·홍종학·배기운·민홍철· 박수현 · 전순옥 · 윤관석 · 박남춘 · 김동철 · 우원식 의원 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3. 6. 4 부좌현·전해철·이만우·윤후덕· 김재윤・전순옥・민홍철・김승남・김민기・ 박인숙·김성곤·강동원·문병호 의원 발의)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2. 9. 6 김동철·김우남·김민기·김승남· 전정희 · 김성곤 · 김재윤 · 최원식 · 김기준 · 강기정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조현룡·황영철·이한성·정성호· 한기호・유정복・최봉홍・손인춘・서상기・ 원유철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2. 11. 30 박기춘·김성곤·김관영·박지원· 최규성 · 한정애 · 김민기 · 정세균 · 임내현 · 주승용·신장용·변재일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7 이낙연·이완영·홍종학·배기운· 최원식 · 이인영 · 김성곤 · 문병호 · 김우남 · 신경민·주영순·김현미·金永柱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2013. 3. 20 박상은 · 윤진식 · 조현룡 · 함진규 ·

이헌승·이장우·이노근·홍문종·심재철· 윤후덕·이미경·신장용·안효대·문병호· 민홍철·박수현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진 의원 대표발의)

(2013. 5. 27 이종진·서상기·주호영·정희수· 정수성·조원진·노철래·김태호·윤재옥· 홍지만·김희국·김상훈·이채익·권은희· 이자스민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3. 6. 10 김상훈·이종진·이강후·유승우· 김세연·정희수·권은희·정수성·여상규· 이노근·이학재·신성범·김태환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1 이명수·정의화·김을동·정희수· 강석호·김희국·이종진·윤진식·이노근· 임내현·이윤석·주승용 의원 발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조현룡·황영철·이한성·정성호·한기호·유정복·최봉홍·손인춘·서상기·원유철 의원 발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3. 20 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 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 문정림 의원 발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4. 30 정부 제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

(2013. 6. 13 노철래·홍문표·이우현·김성태· 김을동·이채익·정수성·이재영·조명철· 정갑윤·유승우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

(2013. 2. 21 심윤조·김영우·강석훈·권은희· 박창식·김성곤·강은희·하태경·김세연· 김정훈·고희선·김기선·정문헌·전정희· 이한성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3. 3. 5 함진규·문대성·이명수·이헌승·

이종진 · 손인춘 · 박대출 · 윤명희 · 강은희 · 박인숙 · 민병주 · 이장우 · 김을동 · 조명철 · 이노근 · 이에리사 · 이자스민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5. 31 정부 제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 발의)

(2013. 3. 6 이상일·노철래·유승우·최봉홍· 이한성·한선교·안홍준·박대출·이만우· 윤명희·박인숙·이노근·심재철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 발의)

(2013. 5. 9 임내현·김동철·이장우·오병윤· 김춘진·박혜자·장병완·박수현·진성준· 이원욱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0 민병두·장하나·이종걸·홍종학· 윤관석·전병헌·이상직·부좌현·배재정· 김관영·배기운·최원식·한정애·도종환· 박수현·문병호·인재근·김광진·유은혜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0 민병두·장하나·이종결·홍종학· 윤관석·전병헌·이상직·부좌현·배재정· 김관영·배기운·최원식·한정애·도종환· 박수현·문병호·인재근·김광진·유은혜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8. 22 정희수·이명수·유승우·정수성· 이만우·박인숙·이한성·김성곤·권은희· 정갑윤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 발의)

(2013. 8. 26 조현룡·이한성·이철우·윤진식· 김한표·안효대·김태원·박상은·함진규· 서용교·김성찬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1. 7 강창일·유성엽·남인순·김관영· 전순옥·신경민·홍종학·박주선·윤호중· 배기운·박민수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발의) (2013. 6. 26 조현룡·김장실·윤진식·강기윤· 이노근・박인숙・함진규・민홍철・이철우・ 이장우 의원 발의)

(이상 2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1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국회의원(장하나) 징계안

(2013. 12. 10 김도읍·강기윤·강길부·강석호· 강석훈·강은희·경대수·권성동·권은희· 길정우·김광림·김기선·김기현·김동완·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김세연・김영우・金永柱・김용태・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숙 · 김회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성린 · 남경필·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정림·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성효 · 박인숙 · 박창식 · 서병수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성완종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심학봉 · 안덕수 · 안종범 · 안홍준 · 안효대·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 유승민・유승우・유일호・유재중・유정복・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진식 · 이강후・이군현・이노근・이만우・이명수・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이재영・李宰榮・이재오・이종진・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헌승 · 이현재 · 장윤석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수성 · 정우택 · 정의화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주호영·진영·최경환·최봉홍·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홍일표・홍지만・황영철・황우여・

12월 12일 요구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황진하 의원 요구)

(2013. 12. 11 부산 북구 금곡동 95-11, 101호 정진우 외 8인으로부터 홍의락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김태근 · 박차옥경 · 이태호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2월 1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이석태로부터 서기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이석태로부터 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2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김태근·박차옥경·이태호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김태근 · 박차옥경 · 이태호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2월 1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김태근・박차옥경・이태호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김태근 · 박차옥경 · 이태호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김태근・박차옥경・이태호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12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침구 및 수지침사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2013. 12.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9 해운빌딩 (한강로3가) 이석기 외 1만 명 으로부터 조명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질문서

(2013. 12. 10 조정식 의원 제출)

군 통신보안 전략에 관한 질문서(2건) 네트워크 보안기술 실증연구에 관한 질문서 네트워크 보안기술 연구지원에 관한 질문서

(이상 4건 2013. 12. 13 김희국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제주민군복합항(해군기지) 갈등해소에 관한 질문서

(2013. 12. 4 김우남 의원 제출) 12월 10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이어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대정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3. 12. 10 정부 제출)

제주민군복합항(해군기지) 갈등해소에 관한 질 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3. 12. 13 정부 제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대안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3. 12. 17 정부 제출)

(이상 4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3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영현황 국회보고

(2013. 12. 17 금융위원회 제출)12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통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3. 12. 12 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주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승계 결정 통지

2013. 12. 16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비례 대표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의 퇴직으로 궐원된 의석 승계자로 황인자 의원이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